

第12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1.1.29.~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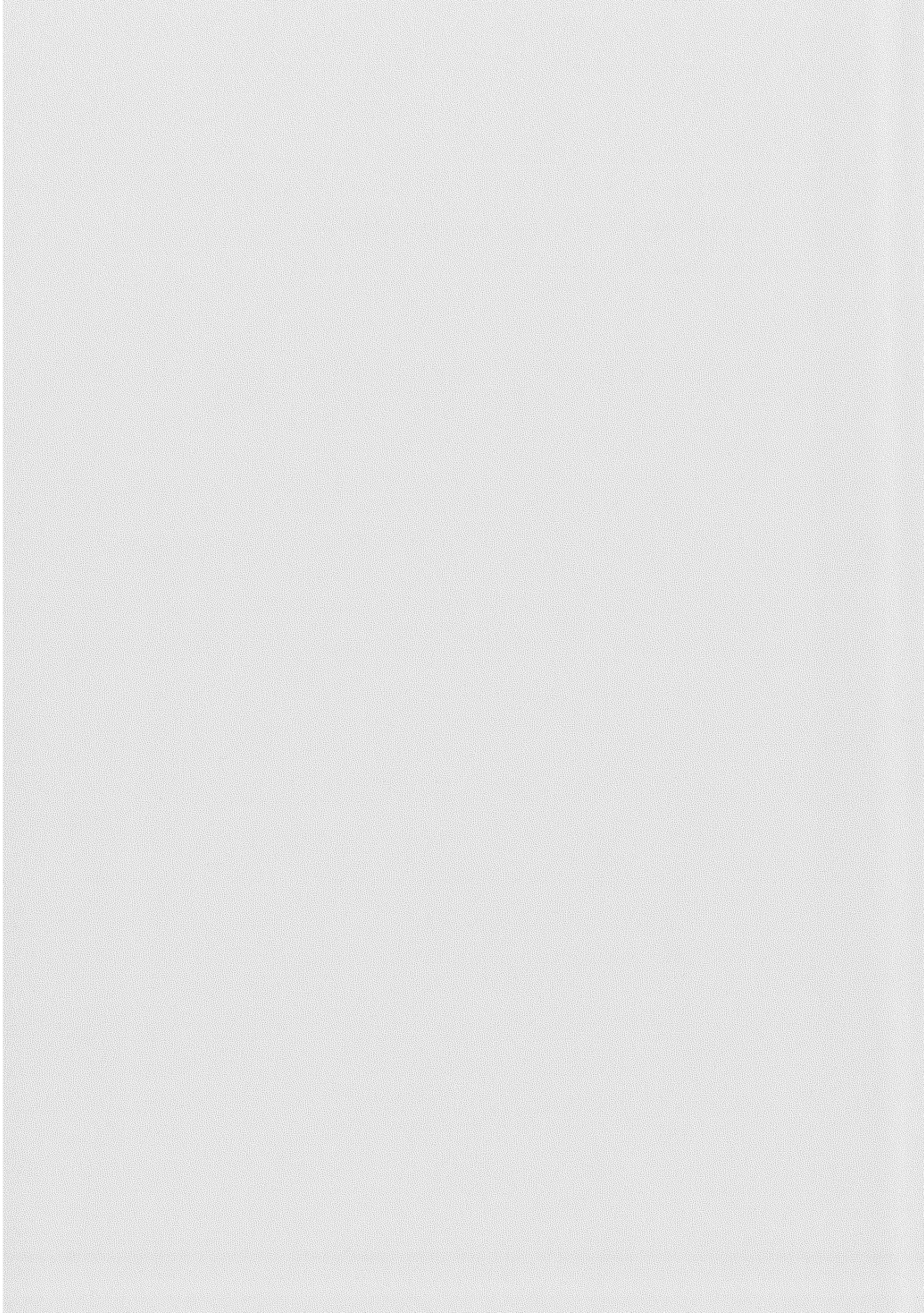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2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3
II.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III.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3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27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29
3. 단재교육상조례증개정조례안	49
4.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55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61
6. 심사보고서	67
V. 별책부록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서(별책 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월 29일 (월요일) 11시 04분

開會式順(第124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개회사
4.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4분 개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왕년

지금부터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개 회 사

(11시 05분)

● 의장 손만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 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 교육이 전국의 정상에 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

[제124회-개회식]

동에 임해 주신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와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에서 수렴된 여론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토대로 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한 질 높은 교육정책의 제안과,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교육여건 마련에 주력해 왔으며, 지방교육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교육위원회 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청의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올해 충북교육 시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유용한 의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아 주시기 바라며, 집행청에서는 이번 회기에 보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선진 충북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신사년에는 교육위원님들은 물론, 집행청 관계관 모두가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올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월 29일 의장 손만재.

● 의사담당 김왕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09분 폐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월 29일 (월요일) 11시 09분

議事日程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2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3.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편성보고의건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2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교육감 제출)
4.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편성보고의건(교육감 제출)
8.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제1차 본회의]

오늘 교육감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손만재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1월 9일 교육감으로부터 의안제출 및 교육위원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01년 1월 17일 공고 제2001-1호로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의안은 2001년 1월 9일자로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1년 1월 22일자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와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화기 의결안건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 2일 제122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22일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2000년 12월 23일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19일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에는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외 1건의 교육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 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12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11시 12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00년도제3-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1월 30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1시 13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신임 기획관리국장의 인사소개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임 기획관리국장님을 인사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단상앞으로 나눔)

신임 이장길 국장은 청원 출생으로서 청주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72년도에 공무원을 시작을 해서, '99년, 작년에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서 교육부에서 대학재정과, 공보관실에서 근무하다 1월 3일자에 저희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감)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개최되는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1만 5천여 교육가족은 금년에도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각종 시책을 알차게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강화 등 다섯 가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대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2001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됨을 추구하는 인간성 함양을 위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가정·사회와 연계하여 전개하겠으며, 기본예절 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습관의 형성과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다니고 싶은 학교가 조성되도록 안방교실을 운영하여 웃음과 인정, 도움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며, 3형제·자매결연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등으로 학교폭력을 예방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함께 사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먼저 밝은사회 만들기 다섯가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공중도덕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내실있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식을 익히는 체험학습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장 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테마식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학생수련 활동과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환경교육에도 충실을 기하여 지난해 교육부가

주최한 생활의식개혁 실천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환경·경제살리기 아가모운동을 범도민 정신운동으로 확산 승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충북인을 육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를 위해 충북정신문화를 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고장의 선비정신을 계승 지도하고, 우리 것 알고 사랑하기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생활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고장 학생들이 지구촌을 주도하는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진취적인 충북학생상을 정립하여 자랑스러운 충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둘째, 창의성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강화하여 부진학생 책임지도제와 자기높이 교육을 전개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여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겠으며, 학습자의 희망과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재량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 전개를 위해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방법을 확산하는 등 교실수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재교육을 다양화하며,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여건 조성

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업교육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앞서는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의 기반확충 및 활용을 적극 도모하며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확대와 에듀러브 교실사랑 홈페이지 활용으로 교육정보가 적극 공유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대비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보건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학교급식과 중식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바람직한 진로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진로판단 권고제를 운영토록 하고, 진로지도에도 더욱 충실을 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통일외지의 함양을 위해 안보현장 견학과 전적지 순례 등 실감나는 통일교육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확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여 학생회의 자치능력을 제고하고 학생 동아리 활동을 적극 조장토록 다양한 또래 활동의 운영과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학생 축제

행사를 학부모의 동참 속에 지역 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활성화되도록 축제를 다양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원의사를 존중하는 학교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실천하는 교직원 회의를 활성화하겠으며, 교육활동 위주의 학교 운영과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고,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학교회계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관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연수회를 개최하고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위하여 교육현장을 찾아가는 교육감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전적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이버 소리함 등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동반자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소개하여 함께 동참하는 학교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넷째, 자긍심이 충만한 교직원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권 확립을 다지도

록 먼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장학활동을 전개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장학방법을 다양화하고, 교내 자율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기관 평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평가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학교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선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으며,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에도 가일층 힘쓰겠습니다.

특히,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구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치고, 유능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와 인사공모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교육전문직 임용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연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교과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내 연구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교육위기의 극복은 교원의 사기진작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 10대 방안을 더욱 강화하여 공문서를 대폭 감축하고, 리콜제 등을 실시하는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교원 존경풍토를 조성토록 깨끗한 교직문화를 창달하겠으며, 교원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현장의 현안문제를 개선하는 단체교섭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실현대화·교단선진화가 21세기 교육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4년간 매년 50억원씩 200억원을 투자하는 2단계 교단선진화를 입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업방법의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를 첨단시설과 설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다양화·유연화하여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내실을 기하도록 실내외 교육환경 개선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신설을 2개교 추진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학이 건실하게 육성되도록 재정결함 지원 570억원 등 총 586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유아·특수교육의 진흥에도 힘써 유아교육의 공공교육화 기반을 더욱 다지고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학교 시설을 학생활동 중심의 환경으로 조성하고, 각종 교직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평생교육 진흥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니다.

끝으로, 교육 행·재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무직원 후견 인제 등을 실시하는 등 고단지원 행정을 내실화 하겠으며, 또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행정 업무의 전산화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 천년을 맞이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식강국 건설에 앞장서는 활기찬 교육을 펼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충북교육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30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단재교육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신사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충북교육비전 21 및 우리 도교육청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여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충북인 육성의 일환으로 학생부문 시상을 별도로 운영하고자 학생부문을 삭제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상부문 중 학생부문을 삭제하고, 둘째, 수상후보자

[제124회-제1차 본회의]

선정도 학생부분 삭제에 따라 열두 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하며, 셋째, 매년 9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상 수상 대상자 추천 제출시한을 삭제한 것입니다.

▶ 참 조 : 단재교육상조례증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학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단위학교별 자율적·교육적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학생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건설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하고, 둘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의무, 분쟁조정신청 및 회의개최, 위원의 제척, 심의 등 결과의 처리를 명시하였고, 셋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7.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편성보고의건

(11시 34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편성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함께 2000년도제3-1회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지역교육청의 정보화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1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7조5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2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5)
(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2000년도 제3-1회 추경 편성 보고는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2월 2일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친 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38억 8,900만원과, 도청으로부터 재해피해 농가 자녀 학비지원 보조금 382만5,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었는 바, 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승인 간주로 처리한 제3-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8,551억4,627만 3,000원에서 38억9,282만5,000원이 증액된 8,590억3,90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영동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외 7건 특별교부금사업비 38억 8,9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사업시기 부족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추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2000년 8월 24일부터 9월 16일 기간중 호우피해 농가자녀에 대한 학비지원금 382만5,000원이 전출 교부되어 중학생 4명, 고등학생 9명을 지원해 주고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 참 조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서(별 책 1)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 및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39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건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
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
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 3건은 조
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1
월 30일까지 심사하여 주시고, 그 심사결과
를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번 제124회.....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저 의장님, 의
장님 저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 의장 손만재

예?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발언권을 주시

겠어요?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좀 의안
심의.....)

● 의장 손만재

말씀하시죠.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하
시겠습니까?

● 조일환 위원

아니 여기 좋습니다.

이 의안심의 하는데 참고 좀 하려고 그러
니다.

저도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특별
교부금이 38억 얼마가 12월 말에 그것을 배
정을 받았죠?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언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면
실제 과장님이라도.....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 조일환 위원

아니 대충만 얘기를 하시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지난해 12월 거의 말경에 됐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 12월 말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예.

여기 28일 교부됐는데요, 그 직전에 했습
니다.

● 조일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확정을 12월 말씀 했다, 그런 애긴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네,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특별교부금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 지시가 왔죠, 언제쯤 왔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이 12월에 왔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글썽 12월 언제쯤 왔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12월 중순경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을 제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전부 다 다목적 강당이거든요. 그 액수나 시설사업으로 봐서 날짜가 없었다고 여기서는 제9항에 우리 지침을 인용을 했는데,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그래도 긴급으로 중순 때라면 올리기 전에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늘 그것을 주문을 했어요. 우리가 법 7조나 지방재정법 35조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의결을 거쳐야 될,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그런 모양이 안됐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3회 추경이 이미 끝난 뒤에 왔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니 글썽 왔더라도 그 기간에 2001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적당하냐, 아니냐. 교육부로부터 예를 들면 예성여고에 다목적 강당을 신청해라, 이렇게 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여하튼, 절차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거다 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찌 교육위원회에 12월 중순이라면, 제가 공문을 좀 보여 주십시오,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적으나마 이 사업이 이렇다면 우선권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굳이 이 예산을 여기다 올려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 말이야. 이것을 사전 승인도 없이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왔으니 이게 날짜가 없어서 천상 추경으로 했다 말이야,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앞으로 모든 우리 예산편성의 정당성이라고 할까, 그 순서가 바뀐 것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 부교육감 유선규

조위원님.....

● 조일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 부교육감 유선규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아직까지는 교육부 장관님의 재량사업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나올런지를 지금 교육청에서 솔직히 말해서 잘 모릅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예.

● 부교육감 유선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회 추경을 편성한 후에 교육부에서 그 동안 이제 재량사업비를,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다 배부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연말에 남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좀 베풀어 주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어디 어디 어디 사업비로 일방적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회 추경도 했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의회에 올려서 다시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넣었다가, 다음에 우리가 예비비로 넣어 놨다가 다음에 추경 때 그것을 다시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없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할 것인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예비비로 넣어 놨다가 그때 가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 목적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집행을 안하면 도로 반납을 해야 돼요. 그

런 점에서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번 추경 때 자세한 보고와 함께 학교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미리라도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부교육감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과거에도 예산심의를 하거나 행정질 의에서도 특별교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교육감께서 형식은, 실체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또 관심이 계신 분들이 특별히 교육부에 이야기 해서 여기에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이미 예산이 확정을 해 놓고, 사업을, 그렇더라도 형식은 교육감이 사업을 요청을 하고 그 액수, 소요액수를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서류에 의해서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먼저 번 예산심의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저희 충북지역 두 분의 국회의원께 결례를 무릅쓰고 제가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고 또 제가 그 국회의원을 직접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그 지역에 국회의원 판단으로 여기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내가 교육부에 예산을 주겠노라 사전에 합의를 받고 교육감에게 신청해 올려라 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교육재정을 좌지우지 한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제가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역시,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반환한다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의 예산상의 손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예성이니, 어디니 이것을 우리 교육청의 사업을 일일이 거기서 지정해서 내보낸다면 이것은 엄연한 우리 교육자치의 도전이고 이것은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금을 너희 교육청에다 이렇게 줄테니, 10억을 주겠다, 20억을 주겠다, 예산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주니까 그것은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권한이지 그것까지 교육부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지정을 하겠습니까. 또 교육감님께서 과거에 답변하실 때도 특별교부금도 여기서 형식은 “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전부 다 저희가 올려서 받은 겁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면, 저는 뭐 부교육감님 우리 실제적인 상황을 제가 부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특별교부금의 명목은 이것은 우리가 도리가 없다 말이야, 교육위원회 승인 안 받으면 어쩌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전국장께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고 확약도 하고, 여기에 대한 다짐도 받고, 회의록에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면 저는 사실은 이 추경에 관한 이 의안은 우리가 우리 교육자치로 볼 때는 정당하게 상정될 수 없는, 절차를 무시한 안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뜻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 오시되, 사전에 사업쯤은, 이것을 확정하는 사업쯤은, 교육위원회에 협의하고, 승인받는.....

저희 교육위원회 존재가 됩니까.

이렇다면 아, 특별교부금이야 예산을 빚하려 승인을 받습니까. 옳으나 그르냐, 삭감을 할 거냐 안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셔서 정말 교육위원회 기능이나 교육위원회 역할을 중시하시고, 서로가 유기적인 이러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시려면 앞으로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에 의결절차를 무시한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 본 위원의 요지는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부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 부교육감 유선규

조 위원님께서 충심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위한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액수를 주고 그것을 정말 필요순위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된 것은 이제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특별교부금에서 나오는 것이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보완을 해 주는 방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당이 필요하다, 다목적 교실이 필요하다 하면, 모든 학교가 다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에다 준 거니까 그것은 일단 주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서 또 필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애를 해서 해 주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시각으로 보서는 조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으시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이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조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권한이 아니고 교육부 장관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지, 이것을 강요하거나 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그러히 양해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제가 뭐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실제 우리가 일선에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또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귀기울여야 됩니다. 요즘 제가 지난 한 두달 전에 모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 교육청 예산은 우선순위도 없느냐, 우선순위도 없느냐. 그 교육기관에는 여기에 비하면 이렇고, 어디에 비하면 이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런 것도 살피지 않는 우리 교육위원이 뭘 하는 겁니까.” 하는 그런 책망적인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돈을 받아 온 것이 잘못다 잘못된 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예산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있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이 안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을 결정할 때에 그래도 교육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사업이 적합한가 하는 그런 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해 주시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보다 그 심의에 충실을 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교육감 유선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도 조일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손만재

에

● 김광수 위원

그 매년 연말에 가서 교육부의 예산이 남기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면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 예산편성 해 온 거마냥 이렇게 해서 쓰고서 그 다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관례화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러한 사정 같습니다.

연말에 가서 3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교육부에서 쓰고서 남으니까 이것을 시·도로 배정하면서 아마 이러한 예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조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까마는, 연말에 38억을 줄테니 이것을 적절히, 적절히 이 용처를 아마 보고하라고 얘기가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용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는 성격으로 해서 연말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심의해서 그 예산 용처를 변경시킬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38억을 줘서 기히 쓰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월을 한다고 해서 그 추경에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그 38억을 금년 2000년도 예산이니 그 용처를 아마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교육부에서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영동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 삼성초의 다목적 교실, 이렇게 해서 체육관이 7개가 나오고 이렇게 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예산 38억을 줄테니 급한 대로 긴급한 대로 충북교육청에서 어디 어디 이렇게 용처를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온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배정된 이 38억이 이것이 참말로 공평하고 이것이 타당하고 잘 됐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심의할 때 봐도 이 다목적 교실 문제라든가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이 강당에 4억5,700, 5억4,900 이렇게 해서 즉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서 다목적 교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적에는 이 예산 가지고서 이 다목적 교실, 체육관을 충분히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추경을 더해 가지고서 이거 아마 다목적 교실이 신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부교육감 유선규

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 저도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부 때 이것이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도 어떠한 급한 일

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까지 쥐고 앉아 있다가 마지막 판에, 아, 이제는 쓸 일이 없다 할 때 이제 시·도교육청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안하면 도로국고에 이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도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남은 돈을 시·도교육청에 좀 베풀어 주기 때문에 꼭 연말 거의 연말 돼서 옵니다. 그런데 여기 배부할 때, 조일환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

을 정확히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의견보다는 교육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급하다,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론수렴을 해서 거의 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영동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이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아느냐, 우리 교육청에서 올려가지고 한 것을 교육부에 일명 핑계를 대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부 장관님한테 그 필요성이 역설이 되면 교육부 장관님이 그 금액을 대개, 제가 이제 장관실에 있어봐서 아는데 대개 보면 뭐 예를 들면, 영동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20억을 주시오, 30억을 주시오, 전부 다 그렇게 들어 옵니다. 그럼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또 돈은 작고 또 달라는 데는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설 등등은 얼마, 어느 시설 등등은 얼마 해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다 되

느냐, 아마 조금, 되는 데도 있지만은 모자라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 판단은 나중에, 지금 이것이 예산이 이대로 편성된 게 아니고 예비비에 들어 있을 뿐이니까 이것이 2001년도 추경때 들어갔을 때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할 수 없이 우리 교육예산에서 조금 더 출연을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서 조금 더 보태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이것 말고 여기보다 더 필요한 데가 있지 않느냐 하면 그때 우리 예산 가지고 한 두군데 더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또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이 그러면 3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내려올 적에 아까 말씀대로 그 학교를 지정해서 이게 내려오게 됐습니까?

● 부교육감 유선규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충족을 해서 그 체육관을 질 적에 7억이면 7억.....

● 부교육감 유선규

예, 물론 요구는 그렇게 합니다.

● 김광수 위원

이게 충분히 필요하게 해야지 이 다음에 또 우리 본도 예산에서 추경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더 여기서 말하자면 더 편성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란 말이지.

● 부교육감 유선규

예, 요구는 우리가 학교에 거기에 어떤 시설에 열마가 필요하나 해서 중학교인 경우에, 초·중학교인 경우에 지역교육청까지 통과를 해서 오는데 그 요구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이것이 정치적인 그런 배려에서 오는지 모르지마는 여기에 이게 오는 돈은 분명하게 국고입니다. 국고기 때문에 보다 더 정당하고, 보다 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 교육부 장관이 이것은 자기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보다 더 분명하게 이것을 집행하고 분명하게 예산편성이 돼야지 어떠한 정치적인 그 배려에 의해서 어디 어디 줘라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맞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여기 이 예산편성을 볼 적에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야 어디는 체육관이 필요한 데가 없습니까. 이래서 이게 교육부 장관의 개인의 소견,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보다 더 투명하고, 보다 더 공정하게 이게 돼야지 되는 것이지, 연말에 가서 목적교부금이라고 해서 줘서 이 변동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게 참말로 타당한 거냐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 저도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매년 예산편성할 때 보면 특별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간접적인 그 예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우리 예산편성에 다목적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주었습니다.

다른 통로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가가 근본적으로 보다 더 참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과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 부교육감 유선규

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금년도부터는 아마 대폭 삭감이 돼가지고 금년도부터는 타오려고 해도 탈 수가 없게 그렇게,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회 교육부장관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물론, 국회에서 다 심의가 거칠 때마다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 위원님이나 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금년도에는 특별교부금 예산을 아마 대폭 감축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아마 금년 말쯤은 이런 얘기가 이 장소에서 안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나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되죠.

● 의장 손만재

조일환 위원님.....

● 조일환 위원

[제124회-제1차 본회의]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니다.

● 의장 손만재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청에서 부감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집행청에서 충분히 받아들여 주시기

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충원 위원님과 조일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중대,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별첨 2)
- ▶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 ▶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별첨 4)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5)

※ 별책부록

-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1회추가경정예산서(별책 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월 31일 (수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손만재

의사일정 제1항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충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다음)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충원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3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 9일과 1월 2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두 번에 걸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3건의 조례안 모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그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학생상을 별도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재교육상 시상부문 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학생부문 별도 시행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수상대상자 추천시기의 삭제, 단재교육상 심사위원회 구성, 수상대상자 2인 추천 등의 문제와 단재교육상 시상 시기를 감안해 볼 때 동 조례의 개정이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판단되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목적이 타당하고 규정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저희들이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정보화 업무 담당공무원의 한시정원을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가 타당하고 개정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역시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심사보고서(별첨 6)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이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충원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

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심사보고서(별첨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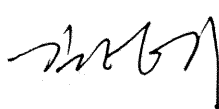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2. .

의 장 손 만 재 

위 원 이 충 원 

위 원 조 일 환 

의사국장 김 성 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24회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1. 1. 29.~1. 31.(3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月 29日(月) (10:30) (11:00)	<input type="checkbox"/> 教育委員 協議會 <input type="checkbox"/> 開會式 [第1次 本會議] 1. 제12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기 : 2001. 1. 29. ~ 1. 31.(3 일간)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3.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4.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 조례안(제안설명) ✓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6.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3-1회 추가경정예산편성보고의건 ✓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조례심사소위원회	
1月 30日(火)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조례심사소위원회	本會議 休會
1月 31日(水) (11:00)	[第2次 本會議] 1.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閉 會	

(별첨 2)

第 1 2 4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臨時會
2001. 1. .

2001 年度
主要業務報告

忠清北道教育廳

報告順序

I. 一般 現況	31
II. 忠北教育의 基本方向	32
III. 主要業務 推進計劃	33

I. 一般 現況

□ 行政 組織

- 기 구 도 교육청 : 2국, 1담당관, 9과
 지역교육청 : 11
 직속기관 : 5
- 정 원 정 무 직 : 1명
 교육전문직 : 194명
 교 원 : 12,631명
 일 반 직 : 1,070명
 기 능 직 : 1,754명 계 : 15,650명

□ 學校 現況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교 원 수
합 계	787	272,341	12,631
유 치 원	337	18,449	919
초 등 학 교	248	124,176	4,860
중 학 교	115	60,603	3,150
고 등 학 교	76	65,887	3,448
특 수 학 교	8	1,440	227
기 타	3	1,78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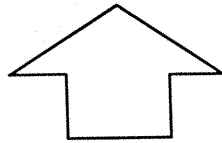
□ 財政 現況 : 豫算總額 8,122億원

세 입	세 출
○ 자체 수입 : 667억원 (8.2%)	○ 급여 복지비 : 5,288억원(65.1%)
○ 의존 수입 : 7,455억원 (91.8%)	○ 학교교육비 및 기타 : 2,834억원(34.9%)

II. 忠北教育의 基本方向

教育指標

21世紀를 主導하는
創意的이고 참된 人材 育成



教育施策

1. 더불어 살아가는 人性 教育 強化
2. 창의성 교육으로 競爭 力 伸張
3. 함께 하는 教育共同體 確立
4. 자긍심이 충만한 敎職 風土 定着
5. 쾌적하고 질 높은 教育 與件 造成

III. 主要業務 推進計劃

1. 더불어 살아가는 人性教育 強化

‘나’ 中心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共同體의 人性 涵養 教育活動을 強化 하여 21世紀 世界化 時代를 주도하는 健康하고 人間다운 民主市民 育成

가. 사람됨을 追求하는 人間性 涵養

□ 實踐 爲主의 人性教育 展開

- 가정·사회 연계 인성교육 실시
- 「인성교육시범단지」 및 자율 시범학교 운영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 우수 사례 시상 및 보급
- 체험과 실천을 앞세우는 도덕교육 : 모범학생 발굴 표창

□ 基本禮節 教育의 內實化

- 기본생활습관 및 바른 가치관 형성
- ‘효경의 날’ 운영 : 경로효친의 생활화
- 전통예절 교육 실시 : 전통 예절실 및 생활관 설치 운영
-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교육 : 성교육 강화

□ ‘다니고 싶은 學校’의 造成

- ‘안방 교실’ 운영 : 웃음·인정·도움이 넘치는 교실 만들기
- ‘열린 대화방’ 운영 : ‘소리함’ 설치, ‘사이버 상담실’ 운영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 3형제·자매 결연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 사이버 공간 폭력에 대한 생활지도 강화 : 건전 사이트 홍보

나. 함께 사는 民主市民의 資質 涵養

□ ‘밝은 社會 만들기’ 實踐

- ‘밝은 사회 5운동’ 전개
 - 내가 먼저 ‘미소 짓기, 인사하기, 양보하기, 도와주기, 약속지키기’
- 바른말 고운말 쓰기 강화
- 좋은 이웃되기 추진 : 전화 및 컴퓨터 통신 예절 지키기

□ 公衆道德과 遵法의 生活化

- 교통 질서 준수 : 자율 교통봉사대 운영
- 질서 지키기 실천 : 공공장소 및 실내 질서 지키기
- ‘깨끗한 거리 만들기’ 전개

□ 內實있는 奉仕活動 展開

-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
- 봉사활동 시범학교 운영 : 2개교(초 1, 중 1)
- 봉사활동 대상기관의 다양화 : 1교 1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 결연
- 각종 봉사활동 행사 참가 : 충청북도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다. 산 知識을 익히는 體驗學習 展開

□ 現場 體驗教育의 強化

- 테마식 체험활동 전개 : ‘체험학습의 날’ 운영
- 가치관 정립 체험학습 전개 : 3D 업종 및 부모님 일 체험 학습
- 도·농간, 시·도간 교류학습 확대
- 가족동반 체험학습의 전개 : 효도 및 대화시간 운영

□ 學生 修鍊活動의 活性化

- 다양한 수련 활동 전개 : 각종 학생야영장·학교시설 적극 활용
- 서해수련원 건립 추진 : 충남 보령(대천 해수욕장내)
-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 : 1학생 1교사 1단체 가입 적극 권장

□ 環境·經濟教育의 充實

- 환경보전의 생활화 : '아가모 운동'의 지속적 추진
 - 환경보전 체험학습 실시 : 1교 1과제 환경 특색사업 전개
- 경제교육의 강화 : 건전한 소비생활 교육 철저

라. 世界를 向한 積極的인 忠北人 育成

□ 忠北 精神文化의 傳承

- 선비정신의 계승 지도 : 우리 고장 인물의 업적 발굴 지도
- '선비의 발자취 답사 코스' 발굴·활용 : 충청문화 순회답사 실시
- '우리 것 알고 사랑하기' 교육 강화 : 전통문화 및 놀이 이어가기

□ 世界市民 育成 教育 強化

-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 : 나라사랑 교육 강화
- 생활 외국어교육의 강화 : 초등영어교육 내실, 외국어 회화교육 강화
 - 다국어 강좌 개설 운영 : 4개 강좌(일, 중, 독, 불어)
 - 외국어 교사 현지 어학연수 실시 : 50명
- 학생 국제교류의 활성화 : 국제이해교육 실시, 국제교류 권장

□ 進取的인 忠北學生像 定立

- 충북인의 자긍심 갖기 운동 전개 : 우리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 진취적인 '충북 학생상' 정립 지도 : 진취성, 창의성, 성실성 함양
- '충북 학생상' 시상제 운영 : 수범 우수학생 발굴 표창

2. 創意性 敎育으로 競爭力 伸張

自律과 創意에 바탕을 둔 學生 中心의 敎育課程 運營과 敎育情報化 推進으로 特技·適性 啓發의 極大化와 質 높은 敎育을 도모하여 知識基盤社會에 대응하는 敎育力 提高

가. 學生 中心의 敎育課程 運營

□ 基礎 學力의 強化

- 기초학력 확인제 운영 :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실시
- 자기 높이 교육 전개 : ‘찬찬한 바른이’ 특별교실 운영
 - 가정과의 연계 상호 협력학습제 운영 : 능력별 과제학습 실시

□ 敎育課程 運營의 多樣化

-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생의 교과선택권 확대
- 교육과정의 지역화 : 교육과정 지역화 자료 개발·보급
-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대비
 -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및 인정도서의 개발·보급
 - 제7차 교육과정 지원 장학협의단 조직·운영 : 장학·연수 지원
- 연구·실험·시범학교 지정 운영 : 83개교(유·초 46, 중·고 37)

□ 學校 裁量活動의 活性化

- 재량활동 운영의 내실 : 학습자의 희망·요구 반영
- 학교별 재량활동 프로그램 개발 활용
- 학교 재량활동 운영 우수사례 발굴·보급 : 우수학교, 우수교사 표창

나. 個性을 尊重하는 教育活動 展開

□ 教室授業 改善 支援 強化

-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방법 확산 : 수업연구발표대회 개최
-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평가 : 수행평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초·중등 연계 교실수업 개선 : 실천 사례 발표대회 개최
- 독서교육의 활성화 : 학교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화 추진

□ 英才教育의 多樣化

- 특수재능아의 조기발굴 지도 : 특수재능아 지도카드 이관·활용
- 사이버시스템을 활용한 영재교육 : 인터넷을 활용한 영재반 운영

□ 特技·適性 教育活動의 充實

- 특기·적성 교육활동 여건 조성 : 지역교육청 단위 강사 인력풀제 운영
- 특별활동과의 연계 운영 : 1인 1특기 함양 특별활동반 편성·운영

다. 科學·技術·情報教育의 充實

□ 學校 科學教育의 振興

- 기초 과학교육의 충실 : 과학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
- 과학교육의 여건 개선 : 과학실험실 확충, 과학실험보조원 배치
- 학교과학관 운영 내실, 교육과학연구원 운영의 활성화
- 과학 수월성교육의 추구 : 과학영재교실 운영, 과학반 운영의 활성화

□ 職業教育의 現場 適應性 提高

- 실업교육 체제의 탄력적 구축 :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
- 실업계고교 교육과정 자율 실험학교 운영 : 청주기계공고
- 실업교육의 내실화 : 실업계 전문교과 담당 교사의 전문성 제고

□ 앞서가는 教育情報化 推進

- 教育정보화 기반 확충 및 활용 : 학교전산망 활용 인터넷 통신비 지원
- ICT활용지원단 조직 운영 : 5개팀(유, 초, 중, 고, 특수)
- 教育정보화지원센터 활성화 : 인터넷 教育방송국 운영
- 教育정보화순회지원단 운영 : 현장방문 당면문제 해결 지원
- 정보화 教育의 내실 : 학생 컴퓨터 教育 및 教員 정보화 연수 강화
-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 초 83개교
- 教育정보공유시스템 운영 : 'Edulove 教실사랑' 홈페이지 활용

라. 삶의 質을 높이는 未來對備教育 強化

□ 健康한 心身 發達 圖謀

- 학교체육의 활성화 : 체육 教育과정 운영의 내실
- 체육의 생활화 운동 전개 : 1인 1운동, 1교 1특색운동 실시
- 체육영재교육 실시 : 초·중·고 연계 지정종목 육성
- 학교보건 관리의 철저 : 보건교육의 충실
- 학교급식 관리 충실 : 학교급식 위생관리팀 운영
- 중식지원사업 추진 : 대상 학생 연중 365일 지원

□ 바람직한 進路意識 鼓吹

- 진로판단권고제 운영 : 학교급별 진로·직업 연계지도
- 진로지도의 충실 : '진로교육' 자료 제작·보급
- 학생진로상담실 설치·운영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용

□ 積極的인 統一意志 涵養

-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실감나는 통일교육 활동 전개
- 통일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활용 : 공모제 운영(20개교)
- 전 교사의 통일교육 지도능력 배양 : 다양한 연찬 활동 전개

3. 함께하는 教育共同體 確立

學生의 自治活動과 敎員意思를 尊重하는 學校經營을 強化하고, 學父母·地域社會의 學校教育 參與 機會 擴大로 열린 教育共同體 構築 圖謀

가. 學生 自治活動의 強化

學生會 自治 能力의 提高

- 학생 생활규정 제정 : 학교별 학생·학부모·교원 공동 참여
- 학급회의의 정례화 : 다양한 자치부서 조직·운영
- 학교·학급 발표회 개최 : 모의 의회·공청회 등
- 「사랑 나눔 대화 마당」 운영
- 학생 자치활동 홍보체제 구축 : 학교 홈페이지 탑재
- 학교신문·교지·동아리지 콘테스트 실시 : 우수작 추천

學生 동아리 活動의 強化

- 다양한 또래활동 운영 : 1학생 1동아리 활동 권장
- 학교급별 연계 및 학교간 연대 활동 전개
- 동아리 활동 결과 발표회 개최 : 작품 전시회, 축제, 어울마당 등

學生 祝祭行事의 活性化

- 학생회 주관 축제 개최 : 학부모 동참, 지역문화 행사와 연계
- 「학생문화 거리축제」 확대 : 학교단위 또는 학교간 공동 개최
- 교내 및 인근학교간 체육대회 개최 : 학기별 1회, 1개 종목 이상
- 제2회 「청소년한마음축제」 개최 : 국악, 그리기 등 6개 분야

나. 敎員 意思를 尊重하는 學校 經營

□ 學校 意思決定의 民主化

- 다기능 협의회 조직·운영 : 유사기능 협의회 통합 운영
- 교직원회의 활성화 : 교직원의 의견 반영

□ 教育活動 爲主의 學校 經營

- 학교경영의 특성화 : 1학교 1특색사업 발굴 추진
-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교원 조직 : 교과별·학년별 협의회 운영
- 학교 교육활동 홍보 강화 : 학교 홈페이지등 다양한 방법 활용

□ 學校長 中心의 責任 行政

- 학교경영의 자율성·책무성 확대 : 자율학교 시범 운영
- 학교장 재량권 강화 : 교육행정기관 권한 위임 확대
- 학교회계제도의 도입 : 학교운영비 총액 배분 확대
 - 학교운영 기본경비 증액 지원 : 전년대비 25% 대폭 증액

다. 學父母의 學校教育 參與 機會 擴大

□ 學校運營委員會 運營의 內實

- 회의 운영의 활성화 및 결과 홍보 강화 : 연수·홍보자료 발간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 순수 교육목적 활용
-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 : 운영위원 연수 4,800명

□ 學父母 教育觀의 再定立

- 학부모 연수회 개최 : 학교 및 지역교육청 단위
- 학부모교실 운영 : 다양한 강좌 개설

□ 學校 教育活動 參與의 活性化

- '학부모의 날' 운영 : '수업공개일' 등과 연계
- 도우미교사제 운영 : 학부모 자원봉사자 활용

라. 地域社會와 함께하는 教育行政

□ 現場을 찾는 「教育監과의 對話」 實施

- 지역교육청 방문 대화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지역인사 대상
- 학교 방문 대화 : 교직원, 학부모 대상 수시 실시
- 학생 초청 대화 : 고등학생 및 벽지 어린이 대상

□ 發展的 意見을 收斂하는 열린 行政

- 도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 '사이버 소리함' 운영
- 충북교육 모니터링제 운영 : 다양한 방법 활용 의견 수렴 및 환류
- 교육활동 홍보 강화 : '충북교육소식' 6회, '충북교육' 2회 발간

□ 同伴者的 教育協力 體制 構築

- 학교공동체의 날 운영 : 학교교육활동 및 수업 공개, 축제행사 동참
- 지역인사 초빙 활용 및 지역사회 시설의 학습장화
-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 강화

4. 自矜心이 充滿한 敎職風土 定着

敎員의 專門性和 責務性 伸張으로 敎育에 대한 信賴와 敎權 確立을 다지며, 敎員의 士氣 振作과 활기찬 敎職社會 造成으로 敎育力 強化

가. 專門性을 伸張하는 獎學活動 展開

□ 敎育課程 中心의 獎學活動 強化

- 敎育활동 지원 장학방법의 다양화 : 요청장학체제 구축
- 담임·통신장학제 운영 : 지역별, 학교별, 교과별 책임장학
- 장학위원제 실시 : 교과별 수업우수교사 등 위촉 활용
- 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 : 동료장학, 임상장학 등 실시

□ 敎育機關 評價의 合理的 運營

- 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책무성 제고 : 敎育정책의 중복화 도모
- 학교 평가 방법의 개선
 - 평가항목예고제 실시, 장학지도와 연계 운영

□ 敎員의 專門性·責務性 提高

- 敎과敎育연구회의 활성화 : 敎과敎育 연구 활동 지원
- 다양한 敎育발전 연찬회 개최 : 敎장·敎감·敎育전문직 연찬회 등
- 「敎育정책창안제」 운영의 활성화 : 중복敎育 특성화 정책 공모·시상

나. 能力 中心의 人事制度 具現

公正·透明한 人事 行政

- 인사 3대 원칙 준수 : 공정·투명·능력중심 인사
- 교원인사예고제 실시 : 시·군간 전보희망 순위명부 공개
- 교원 인사정보 공개 : 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등

能力 爲主의 敎員 人事

- 교원 임용제도의 개선
 - 신규교사 임용시험 평가항목의 다양화 : 필답·논술·면접·실기
 - 사립학교 교원임용 공개 전형 권장
-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 확대

敎育 專門職 任用制度 改善

- 교육장 임용 「인사 공모제」 운영 확대
-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 임용 : 평가 영역의 다양화

다. 自律研修 體制의 確立

研修 機會의 擴大

- 연수 체제의 개선 및 운영의 내실
- 연수 평가방법의 다양화 : 논술, 토론, 수행평가 등
- 학교단위 자율연수 강화 : 1교사 1특기 함양 연수 실시

敎科 專門人 養成

- 연수 이수제 실시 : 3~5년 주기 직무연수 및 정보화 연수
- 학년·교과 담임 전문화 : 담임교사의 연임·중임제 정착
- 교과소양 인증 취득 권장 : 석사학위 및 기사 자격 취득 등

□ 研究 雰圍氣 造成

- 교과협의회의 활성화 : 동료장학의 내실
- 교사 동아리 활동 적극 권장 : 교과 관련
-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의 내실 : 35명
- 각종 연수회 및 학회 가입 활동 권장

라. 敎員의 士氣 振作

□ 業務 輕減 推進 強化

- 공문서 생산량 대폭 감축 : 공문서 시행 방법 개선
- 공문서 리콜(recall)제 시행 : 불합리한 공문 회수 조치
- 교내 전결권의 확대 적용 : 결재 소요시간 단축
- 일과 중 교사 대상 회의 및 행사 억제 : 유사행사 통·폐합
- 교원 업무의 전산화 및 분담 적정화
-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내실 : 연구 결과 보고의 간소화
- 업무개선 방안 공모제 실시

□ 敎員 尊敬 風土 造成

- 스승 존경심 함양 운동 전개 : 학부모·지역사회 대상 홍보
- 깨끗한 교직문화 창달 : 각종 부조리 근절
- 「교원안전망」 구축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 敎員團體와의 協力體制 構築

- 교원단체담당반 운영 : 교원 고충상담 해결 노력
-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약 이행 충실 : 교육현장 현안 문제 개선

5. 快適하고 質 높은 教育與件 造成

2段階 教壇先進化 事業의 立體的 推進으로 授業 革新을 加速化하고, 均衡 있는 學校 發展 支援으로 즐겁게 가르치고 재미있게 배우는 教育與件 造成

가. 教室現代化 · 教壇先進化 推進

□ 教壇先進化의 立體的 推進

- 2단계 「교단선진화」 4개년 계획 추진 : 매년 50억원씩 투자
- 컴퓨터 확충 및 업그레이드 추진, 주변기기 보급
- 멀티미디어 교육용 S/W 개발 · 구입 보급
- ICT 활용 수업방법 개선의 가속화 : 멀티미디어 활용 연수 강화
- 교육용 S/W 전람회 및 공모전 개최 : 우수자료 전시 및 보급

□ 尖端 施設 · 設備의 擴充

- 학교시설의 다양화 · 유연화
 -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열린 · 수준별 교실 확충
 - 다목적 교육활동 공간 확보 : 특별교실, 동아리 방 등
- 학교시설의 복합화 추진 : 학교 인근 각종 공공시설과 연계

□ 教育環境 改善의 內實

- 교실 증 · 개축 : 145.5실
- 난방시설 개선 : 1,989실
- 화장실 개선 : 15실
- 조도 개선 : 1,641실
- 오수정화조 설치 · 개선 : 54개교
- 외부환경 개선 : 50개교

나. 均衡있는 學校 發展 圖謀

□ 合理的인 學校 再配置

- 학교 신설 : 2001년 신설 2개교(복대중, 꽃동네학교)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탄력적 추진
 - 학교 폐지 3개교(본교 1, 분교장 2), 분교장 개편 1개교
 - 초·중 통합 운영 확대 : 2개교(덕산초+신덕중)
- 다양한 형태의 학교 운영 : 특성화고등학교 등
- 폐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 : 자체 활용, 임대, 매각

□ 健實한 私學 育成 支援

- 재정 지원의 내실화 : 재정 결함 570억원, 교육환경개선 16억원
- 사학기관 경영평가제 실시 : 자체 재원 확충 및 자구노력 유도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건전한 사학 육성 지도

□ 幼兒·特殊教育의 振興

-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 기반 강화 : 취원을 제고, 종일제 운영 확대
- 특수 교육의 기회 확대 : 통합교육의 확대, 재택·순회교육 실시

다. 教育 福祉施設의 擴充

□ 學生活動 中心의 環境 造成

- 신설 학교의 교사동별 홈페이지 설치 : 휴게공간 마련
-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교실 확보 : 동아리방, 회의실 등
- 각종 학생 편의시설 확충 : 난방시설·화장실 개선

□ 教職員 便宜施設의 擴充

- 학년별·교과별 교원 연구실 지속적 확충
- 교직원 편의실 확충 : 휴게실, 강의실 등

□ 平生教育의 振興

- 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 : 시설 개방, 강좌 개설
- 지역평생학습관 운영 : 다양한 강좌 개설,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라. 教育 行·財政의 效率化

□ 教壇 支援行政의 內實

- 교육규제 완화 : 내부규제 일몰제 운영, 권한 위임 확대
- 소규모학교 업무지원 강화 : 1교 1행정요원 배치
- 『사무직원 후견인제』 운영 : 신규 사무직원 행정력 향상
- 『충북교육행정서비스현장』 제정 운영 : 5개 분야

□ 教育財政의 效率的 運營

- 예산 편성 및 배분의 합리화
- 『물품구매 단가결정 입찰제』 실시 확대 : 예산 절감
- 자체 수입의 증대 : 예금 이자 및 재산 수입 등
- 학교회계 제도의 조기 정착 : 예산 편성 및 결산 연수 실시

□ 教育行政 業務의 電算化

- 교육행정전산망 운영 : 기관간 문서유통시스템
- 업무용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 : 교육통계의 6종

(별첨 3)

의안번호	제 124 - 1 호
의 결 년 월 일	2001. 1. . (제 회)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1. 9 .

단체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 - 1
----------	---------

제출년월일 : 2001. 1. 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초 등 교 육 과

개정사유

“충북교육비전 21”에서 밝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충북인 육성의 일환으로 학생부문의 시상을 별도로 운영하고자 학생부문을 삭제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함

주요골자

- 시상부문중 학생부문 삭제(안 제2조)
- 수상후보자를 12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안 제8조의2 제2항)
- 매년 9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제출시한을 삭제(안 제8조제6항)

개정근거

- 충북교육비전 21

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신구문대조표
- 충북교육비전 21(관련사항 발췌분)

단체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체교육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단체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술상
2. 사도상
3. 공로상

제3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상 : 충청북도내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직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의 직원 및 일반인
2. 사도상 : 충청북도내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3. 공로상 : 충청북도내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일반인, 단체 및 기관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중 "매년 9월말까지"를 "다음"으로 한다.

⑤교육상 수상대상자는 교육장, 고등학교장, 본청 국장급이상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중 "12인"을 "6인"으로 한다.

【별지1】의 도표중 "면학상, 충효상, 봉사상"을 삭제한다

【별지2】내지 【별지4】서식중 "○○부 ○○상"을 "○○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와 타의 모범이 된 학생에 대하여 단재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단재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1. 교원 및 일반부문 가. 학술상 나. 사도상 다. 공로상 2. 학생부문 가. 면학상 나. 충효상 다. 봉사상	제2조(시상부문) 1. 학술상 2. 사도상 3. 공로상
제3조(수상대상자)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원 및 일반부문 가. 학술상 : 충청북도내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직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의 직원 및 일반인 나. 사도상 : 충청북도내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다. 공로상 : 충청북도내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일반인, 단체 및 기관 2. 학생부문 : 충청북도내 각급학교 학생 ②~③ (생략)	제3조(수상대상자)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상 : 충청북도내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직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의 직원 및 일반인 2. 사도상 : 충청북도내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3. 공로상 : 충청북도내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일반인, 단체 및 기관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추천 및 심사) ①~④(생략)</p> <p>⑤교육상 수상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p> <p>1. 교원 및 일반부문 : 교육장, 고등학교장, 본청 국장급이상</p> <p>2. 학생부문 : 교육장, 고등학교장</p> <p>⑥교육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제8조(추천 및 심사) ①~④(현행과 같음)</p> <p>⑤교육상 수상대상자는 교육장, 고등학교장, 본청 국장급이상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p> <p>⑥.....다음.....</p> <p>1~3.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수상후보자 선정) ①(생략)</p> <p>②위원회는 제1항의 수상후보자를 12인 이내로 선정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다.</p> <p>【별지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수상대상자공적심사기준</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상 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 적 심 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술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교육에 공헌 ○ 교육에 관한 저서 간행으로 교육 현장에 공헌 ○ 교원 및 일반직,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의 부문에서 학술 또는 예술 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사회적 공헌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도상</td> <td>○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 타 교원의 귀감이 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로상</td> <td>○ 충청북도내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공헌이 현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면학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학에 힘써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밝 정하며 타의 모범 ○ 예·체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 ○ 과학, 기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추효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철한 애국심 ○ 효행이 지극 ○ 반공의 생활화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봉사상</td> <td>○ 협동, 봉사, 준법, 선행</td> </tr> </tbody> </table> <p>【별지2】 내지 【별지4】 ○○부 ○○상</p>	수상대상자공적심사기준		상 별	공 적 심 사	학술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교육에 공헌 ○ 교육에 관한 저서 간행으로 교육 현장에 공헌 ○ 교원 및 일반직,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의 부문에서 학술 또는 예술 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사회적 공헌 	사도상	○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 타 교원의 귀감이 됨	공로상	○ 충청북도내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공헌이 현저	면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학에 힘써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밝 정하며 타의 모범 ○ 예·체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 ○ 과학, 기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 	추효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철한 애국심 ○ 효행이 지극 ○ 반공의 생활화 	봉사상	○ 협동, 봉사, 준법, 선행	<p>제8조의2(수상후보자 선정) ①(현행과 같음)</p> <p>②.....6인.....</p> <p>【별지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수상대상자공적심사기준</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상 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 적 심 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술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교육에 공헌 ○ 교육에 관한 저서 간행으로 교육 현장에 공헌 ○ 교원 및 일반직,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의 부문에서 학술 또는 예술 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사회적 공헌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도상</td> <td>○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 타 교원의 귀감이 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로상</td> <td>○ 충청북도내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공헌이 현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삭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삭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삭제)</td> </tr> </tbody> </table> <p>【별지2】 내지 【별지4】 ○○상</p>	수상대상자공적심사기준		상 별	공 적 심 사	학술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교육에 공헌 ○ 교육에 관한 저서 간행으로 교육 현장에 공헌 ○ 교원 및 일반직,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의 부문에서 학술 또는 예술 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사회적 공헌 	사도상	○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 타 교원의 귀감이 됨	공로상	○ 충청북도내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공헌이 현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수상대상자공적심사기준																																	
상 별	공 적 심 사																																
학술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교육에 공헌 ○ 교육에 관한 저서 간행으로 교육 현장에 공헌 ○ 교원 및 일반직,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의 부문에서 학술 또는 예술 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사회적 공헌 																																
사도상	○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 타 교원의 귀감이 됨																																
공로상	○ 충청북도내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공헌이 현저																																
면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학에 힘써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밝 정하며 타의 모범 ○ 예·체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 ○ 과학, 기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 																																
추효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철한 애국심 ○ 효행이 지극 ○ 반공의 생활화 																																
봉사상	○ 협동, 봉사, 준법, 선행																																
수상대상자공적심사기준																																	
상 별	공 적 심 사																																
학술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교육에 공헌 ○ 교육에 관한 저서 간행으로 교육 현장에 공헌 ○ 교원 및 일반직,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의 부문에서 학술 또는 예술 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사회적 공헌 																																
사도상	○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 타 교원의 귀감이 됨																																
공로상	○ 충청북도내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공헌이 현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충북교육비전 21

□ 적극적인 충북인 육성

1. 목 적

- 지역 유대감의 공유기반 위에 미래사회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충북인을 육성하며,
- 능력과 책임을 겸비한 자율적인 충북인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충북인의 기질은 온건하고 수동적이라는 선입견이 널리 퍼져 있음
- 충북 지역의 정서를 감안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함
- 세계화를 주도할 인재 육성 차원에서 충북인의 위상 정립이 시급함

3. 충북인의 자긍심 갖기 운동 전개

- 나의 특기와 소질을 찾아 '나의 자랑'을 바르게 알고, 이를 스스로 키워가며 자긍심을 높인다.
-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4. 자율적인 학생상 정립

- 가정과 학교 등에서 할 일을 미리 정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갖는다.
- 교육과정 운영면, 학교 생활면, 가정 생활면, 개인 생활면 등
- 단체활동 및 학급에서의 역할을 자율적으로 분담하고 처리과정에서 오는 기쁨을 알게 한다.

5. '충북 학생상' 시상

- 선비정신을 구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표창한다.
- '충북 학생상'은 초·중·고별로 충의상, 효행상, 예절상, 협동상, 인내상, 불굴상, 용감상, 신지식인상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수범학생을 선정, 시상한다.

6. 전 망

- 충북인의 자긍심 갖기 운동 전개를 통하여 충북인의 이미지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 자율적인 학생상 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의리와 명분을 중요시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정립될 것이다.
- '충북 학생상' 시상제 운영을 통한 수범사례의 발굴 보급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학생상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별첨 4)

의안번호	제 124 - 2 호
의 결 년 월 일	2001. 1. . (제 회)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1. 9.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24-2
----------	-------

제출년월일 : 2001. 1. 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초 등 교 육 과

제정사유

학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단위학교별 자율적·교육적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학생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건설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골자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안 제2조)
 1.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의무(안 제3조)
- 분쟁조정 신청 및 회의개최(안 제6조 내지 제7조)
- 위원의 제척, 심의등 결과처리(안 제8조 내지 제9조)
- 교육청의 지원(안 제11조)
 1. 교육감 및 교육장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원
 2.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한 사항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함.

제정근거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조례안 : 불임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공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등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확인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4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개최등) ①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심의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등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 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중 학생에 대한 폭력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 (교육청의 지원)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한 사항에 대한 공제회의 경제적·법률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제회 기금 조성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2조 (충청북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동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3조 (학교운영위원회 미구성 학교에 대한 경과 조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제3조의 구성방법에 의하여 위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

○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①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④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교육과 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 ① 각급 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별첨 5)

의안번호	제 124 호
의 결 년 월 일	2001. 1. .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1.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 - 3
----------	---------

제출년월일 : 2001. 1. 2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사유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지역교육청의 정보화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1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골자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은 12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개정근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
-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조직·인력 보강 계획
[교육부 지교81413-1042('00.11.2)]

개정 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다음에 “(이하 “영”이라 한다)”
를 삽입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한시정원)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12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
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제3조의 한시정원 유효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삽입)</p> <p><신 설></p> <p>제3조(생략)</p>	<p>제1조(목적)(이하 “영”이라 한다)..... </p> <p>제3조(한시정원)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12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현행 제3조와 같음)</p>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9516호)

- 제17조(한시정원)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 ②교육감은 총 정원을 초과하여 한시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
- ④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
- ⑤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제725호)

제2조(한시기구의 설치 및 한시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두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유·존속기간 및 그 배경설명서
2. 총 정원을 초과하는 한시정원 소요내역 및 기존정원의 활용방안
3.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과정표
4. 1인당 업무량 산출표
5. 당해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6. 사무실 확보·활용계획서 및 예산조치 계획서

②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이전 3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별첨 6)

(제124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2001. 1. 3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단체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1년 1월 29일
- 다. 상정일자 : 2001년 1월 29일(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1년 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이주원)

가. 개정사유

“충북교육비전 21”에서 밝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충북인 육성의 일환으로 학생부문의 시상을 별도로 운영하고자 학생부문을 삭제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함

나. 주요골자

- 시상부문중 학생부문 삭제(안 제2조)
- 수상후보자를 12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안 제8조의2 제2항)
- 매년 9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제출시한을 삭제(안 제8조 제6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학생상을 별도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재교육상 시상부문 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학생부문 별도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안 제8조 제2항의 수상대상자 추천시기 삭제 문제와 기존 조례의 단재교육상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유보함.

6. 심사결과 : 보류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1년 1월 29일

다. 상정일자 : 2001년 1월 29일(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1년 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이주원)

가. 개정사유

학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단위학교별 자율적·교육적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학생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건설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안 제2조)
 1.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의무(안 제3조)
- 분쟁조정 신청 및 회의개최(안 제6조 내지 제7조)
- 위원의 제척, 심의등 결과처리(안 제8조 내지 제9조)
- 교육청의 지원(안 제11조)
 1. 교육감 및 교육장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원
 2.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한 사항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목적이 타당하고 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1월 22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1년 1월 29일
- 다. 상정일자 : 2001년 1월 29일(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1년 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개정사유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지역교육청의 정보화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1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은 12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을 동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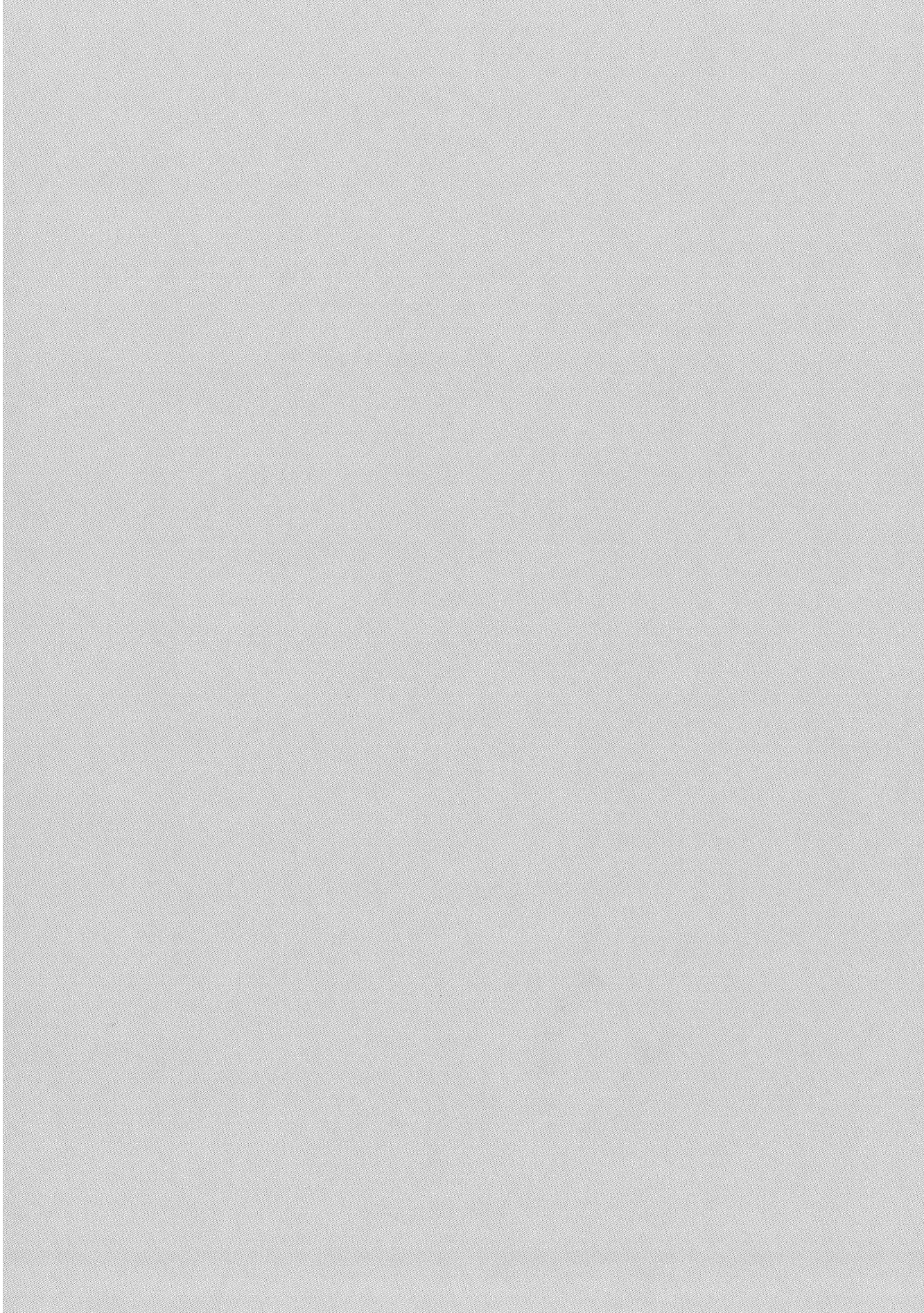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第12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79
II.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83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19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월 29일 (월요일) 12시 10분

議事日程 (제124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2시 1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송진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충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이기수 위원

예, 좋습니다.

● 이충원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송진하

이충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이충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충원

간략히 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기 중에 제가 맡은 소임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일 위원 추천합니다.

●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이상일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의가 없으므로, 이상일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이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모시고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출의견

(12시 11분)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저를 선출해 주신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 이기수 위원

3. 의사일정결정의견

(12시 13분)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봐주세요.

이 유인물에 의하면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서 조례안 3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 이기수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심
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제1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
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기수, 조일환.

○ 출석공무원 : 1명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월 30일 (화요일) 11시 12분

議事日程 (제124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단재교육상조례증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단재교육상조례증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11시 12분 개회)

● 위원장 이충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회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예년에 보기 어려웠던 눈이 많이 와서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은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후로 하느냐, 그냥 하느냐 논의하다가 늦었습니다. 늦게 돼서 집행청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원거리에 있으신 위원님 한 분이 시내 통

과 중이신데 더 기다리시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규칙에 의해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오시네요.

(조일환 위원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옴)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 위원장 이충원

의사일정 제1항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설명은 어제 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듣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신 초등교육과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단재교육상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3쪽에 있는 신·구조문표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서 개정내용은 단재교육상 중에 학생부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목적에 모범이 된 학생,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1조의 개정내용이고요, 2조는 단재교육상이 교원 및 일반부문과 학생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부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3조에서도 수상 대상자가 학생부문이 삭제됨으로 해서 일반부문에 학술

상, 사도상, 공로상만 남기고 학생부문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3조의 개정내용으로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8조에 추천권자가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누어서 추천권자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일반교원 및 일반부문에서 추천권자를 하나의 문장으로 되도록 이렇게 정선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8조의 2항은 학생부문과 일반·교원부문 이렇게 나누어서 열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학생부문이 삭제되기 때문에 반이 줄어서 일반교원 부문의 6인만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내용도 학생부문의 면학상, 충효상, 봉사상 부문이 삭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 참 조 :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본회의(별첨 3)

● 위원장 이충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의 좌석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학생을 제외한 그런 조례안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이제까지 그러한 단재교육상을 줬는데 그 학생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부문이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이 열네 번을 운영하면서, 14회를 운영하면서 그때 당시 제정할 때는 면학상, 충효상, 봉사상이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하고 보니까 시대가 변천하면서 바라고자 하는 학생상도 다시 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기상이 있는 학생을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좀 그 학생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 학생상을 다시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다시 학생상을 정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럼 학생상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정도의 상을 마련하는 거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송진하 위원님.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충북학생상 시상, 학생은 없애고 학생부문은, 그것을 단재교육상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때는 뭐라고 할까, 한 사람씩 교육감 표창도 했어요. 요 근래는 안하고 있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 **송진하 위원**

이 표창이라는 것은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건데 구태여 단재교육상에서도 주고, 또 충북학생상에서도 줄 수도 있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뭐 명목만 있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답변말씀을 드릴까요?

● **송진하 위원**

예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재교육상에서 학생부문이 처음에 면학상, 충효상, 봉사상, 이렇게 정할 때는 그때에 필요한 상이었었습니다. 이 단재교육상 영역부문에서. 그런데 이제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는 그런 교육시책을 내걸고 추진을 하면서 지금에 필요한 것은, 더군다나 충북인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온건하고 수동적이고 그런 것에서

보다 진취적인 그런 사람을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책 하에서 이게 좀 달라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첫째 사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을 많이 주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는 이것을 이원화 된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최고상이냐 하는 그런 쪽의 논란이 좀 오고갈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생각하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성실한 그런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다시 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떼어 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상을 주는데 어느 것이 더 높은 상이고 낮은 상이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단재교육상은 단재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부분에서 주면 되는 것이고, 충북학생상에 대한 상은 또 그 나름대로 충북학생상에 적합한 상을 주면 되는 거지 그것을 뭐 충북학생상 상이 워냐, 단재교육상이 워냐, 그런 게 곤란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없앤다 하는 것은 명문이 안 설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많은 상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이미 돼 있는 상을 없애서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좀 생각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질의하신 송진하 위원님과 같이 학생들한테 그 상을 주는 것은 좀더 잘해 보라는 취지에서,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상을 참 많이 줘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이 고무돼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여기에서 단재교육상에서 학생부문의 면학상이나 충효상이나 봉사상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을 제정해서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새로 다른 부분을 고려된 상을 단재교육상에다 집어넣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또 어느 상이라는 이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상이라고 하는 상을 제정을 해서 보다 더 폭넓고 다양하게, 예를 들면 진취상이라든지 창의상이라든지 성실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시상하는 학생 수도 늘이고, 이렇게 해서 폭넓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이 학생상에서 주던 것을 충북학생상 쪽에다가.....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전부 흡수가 됩니다.

● **이기수 위원**

흡수가 되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에

● 이기수 위원

지금 단재교육상, 단재상, 이 부분에다 놓고서 지금 학생부문을 그런 쪽에 변동해 갖고 이원화 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학생부문 이래 놓고서 거기에 진취상이다, 또는 뭐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항목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갖고서 현 기존 학생부문을 살려두고서 학생상은 또 학생상대로 그대로 두고 하는 방법하고, 그것을 이쪽으로 학생상이라고 해 갖고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이쪽 단재상은 아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방안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단재교육상은 우리의 선각자이신 단재의 얼을 살리고, 그 애국적인 단재의 정신, 이런 것을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주는 상인데 이것을 굳이 학생상 쪽에다가 이쪽 것은 없애버리고 흡수할 이유가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단재상 시상할 때 저희들이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보면, 초등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첫 번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신데, 우리 교육은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근래에는 면학상 정도는 저기하

지만 이 충효라든지 봉사상은 추천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요즘에 와서 우리가 바라는 그 충북학생상을, 우리가 충북학생상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어서 그러한 상을 다시 한번 제정한다는 데 뜻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그 일반교원하고 사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별로 더 관심이 적은 것 같은 감을 주고 해서 별도로 학생만의 상을 좀 제정해서 마련해서 줘면 뜻이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이기수 위원

글쎄,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지마는 그냥 학생상이라는 것보다도 우리의 선각자인 단재 선생님의 얼을 이어받는 그런 상이라면 배우는 애들로서는 그 애국적인 그 정신이나 그에 여러 가지 정서교육에 단재 얼을 이어받아 갖고서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게끔 격려하는 측면에서 주는 이 상이야말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면학상만 들어오고 봉사상이나 그외 충효상 같은 덕목이 요새 학생들한테는 그리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면 거기다가 항목을 진취상이라든지 또는 창의상이라든지 이런 덕목을 서로 잘 바꿔갖고서 이 단재상은 지금까지 줘 왔던 상이고 하기 때문에 좀 바꿔갖고서 계속해서 이 상이 단재상이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상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원**

이상일 위원님.

● **간사 이상일**

이상일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되는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재상에서 학생부문만 떼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 **간사 이상일**

떼어서 충북학생상이라는 명칭으로 단재상과 비슷한 수준의 상을 새로 제정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상일**

그리고 뭐 아까 단재교육상이 더 높으나, 새로 제정하는 충북학생상이 더 권위가 있느냐, 뭐 상을 권위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장관이 주는 상이 다르고, 총리가 주는 상이 다르고, 대통령이 주는 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재교육상에서 이것을 분리해 냈을 때에 상의 위상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걱정이 하나 서고, 두 번째로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을 선정하는 선정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그렇습니다.

● **간사 이상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게 무슨 선비정신이니, 뭐 효행이니, 봉사니 이런 쪽 보다는 좀더 진취적이고 이런 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21세기 국제화 시대이고 새로운 영재 뭐 뛰어난 인재를 키운다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의 엘리트 계급이나 부자들이 서양의 엘리트나 부자들처럼 존경 못받는 이유가 올바른 삶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신문과 텔레비를 보면서 저도 마음에 참 몽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인가 무역학과 중퇴를 하고 일본에 유학을 간 학생이 다른 나라에서 지하철에 술 취해서 있는 사람을 아마 구하려다가 자기가 죽은, 그래서 일본의 총리대신 이하 각 장관들이 와서 조문하는 것을 보고, 이런 젊은이 하나 없어지면서 개인적인 가족적으로는 대단한 손실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아, 한국의 인성교육이 잘 됐구나' 하는 것을 저는 세계 만방에 선포한 어떤 개인적인 과학영재나 뭐 하나 키운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했을 때 지나치게 우리 교육이나 상이 시류에 편승해서 영재 쪽, 진취적인 것, 이런 것만 하면 우리 고유의 선비정신이라든지 우리의 충효정신이라든지 봉사, 이런 것은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는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수상자를 봐도 역대 수상에서 면학상은 많습니다. 뭐 들쭉

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충효상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지 빈칸이 있고 그런데, 물론, 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억지로 없는 놈을 만들어서 남발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도내 27만이나 되는 많은 학생 중에 왜 충효상과 봉사상이 이렇게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부득이 단재교육상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표창을 분리해서 충북학생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선발기준을 시류에 너무 맞게 학업성취도 또는 진취적인 기상, 이런 것에 치중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는 머리도 좋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을 때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번쯤 재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충효상과 봉사상은 좀 지양을 하고 면학상 쪽으로 더 치중을 하실 겁니까? 같겠을 때.

● 교육국장 이주원

갈려진 그 내용 속에는 창의성과 진취적, 성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그 덕목 속에 그 안에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빠진 게 아니고.

● 간사 이상일

물론, 그 속에 들어가는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타이틀로 딱 떼어서 하는 것이고, 몽텅거리서 “아 재는 뭐 부모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한다.” 그렇게 다 몽텅거리는 것이고, 공부는 비록 잘 못하더라도, 야, 재가 참 사회 봉사활동을 토요일, 일요일이면 꽃동네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참 지체부자유자가 있는 데 가서 뭐라도 하는 이런 애들이 다 공부를 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어떤 봉사상이나 이런 것 쪽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됐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효상이라든지 효행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협동, 인내, 불굴, 용감, 또는 신지식인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보다 더 다양하게 폭넓게 하려고 하는 그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상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제 마지막이신 조일환 위원님.

● 조일환 위원

제가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도로사정을 예측을 못하고 조금 늦게 회의를 지체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을 합니다.

우선 이 단재상 수상에 대한 소위 수상자들에 대한 교원이나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말하자면 부가점수를 주는 겁니까, 무슨 학생에게 진학 혜택을 주는 건가, 어떤 혜택을 줍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지금까지 학생들은 그런 거 상을 타니까 생활기록부상에 올라가 가지고 혹시 보탬이 되는 쪽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 부가점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조일환 위원

특별전형 그런 거.....

● 교육국장 이주원

에

● 조일환 위원

교원같은 거, 교원.....

● 교육국장 이주원

교원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는 그런.....

● 조일환 위원

교육감 표창.....

● 교육국장 이주원

네, 그런정도 담겨져 있죠.

● 조일환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재상의 이 제정의 근본정신이 뭘니까, 왜 단재상을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까? '84년도부터 왜 제정을 했느냐, 이 말이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단재의 얼을 계승한다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얼, 그 막연한 말씀인데 그 얼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좀 아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단재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희 지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요, 역사가요, 학자요 말입니다. 국민계몽에 관해서 참 우리 국민의 독립의식 내지는 국가의 그 회복이랄까 일제에서의 어떤 독립운동가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거에 단재시상에 이렇게 참여를, 평소에 과연 이게 단재라는 이름이 적격하냐 말입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야말로 그 제정하는 정신이 명확하고 해야지, 남들이 납득을 해야 돼요, 납득, 납득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단재교육상 조례를 지금 가져오래서 봐도 이게 분명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생부문은 여기서 삭제 를 하고 새로 학생부문에 대해서 시상할 새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네

● 조일환 위원

뭘니까, 그 내용이?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충북학생상을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북학생상.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충북학생상을 별도로 이렇게 여가서 삭제를 해서 이것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상하는 것과 단재상에서 시상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보다 더 폭넓게 그 시상부문도 그렇고 수상자도 그렇게 폭넓게 하면서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쪽의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까라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는 여기서 보장을 하거나 기존 이 단재상의 영역을 역사를 살리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무엇 때문에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드느냐 이거죠, 왜, 부득이.

아, 뭐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떤 명분이나 말입니다 형식이나 실적에 이런 데에 우리가 연연하고 우리 행정이 실속이 없다 이거여, 실속이. 실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새로 삭제하고 새로 할 때는 충분한 뭐 충복이니 단재상하고 별도의 어떤 특별한 그런 학생

을 시상할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쪽으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기 의안을 주실 때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계으릅니다마는 단재교육상의 조례라든지, 또 교육위원회에서 이후에 요청한 그간의 역대 수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자료를 깔아 주시도록, 앞으로 의안제출할 때는 이 점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조금 불분명한 게 있는데 학생부문, 역대 수상자입니다. 이게 뭐 초·중·고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게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8조의 2항에 보면 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원, 여기 보면. 그런데 제3조에도 있습니다. 사도상 보면 도내 각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원이라 하면 교장, 교감, 교사 다 포함돼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런데 참 이게 사도상이 말입니다, 사도상이 시상 초기서부터 현재까지 교장 내지는 우리 국장이나 전문직밖에 없어요. 그래 1만 3천 우리 교육자 중에서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이 분들이 15,6년간에 말이에요 우리 충북교육의 사도로서, 나는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매년 상을 주고서도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언론

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면 교원은 뭐여, 교사는 뭐냐 교사는, 정말로 참 숨어서 자기의 어떤 승진이나 말입니다 영리나 이런 것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일하는 우리 교육가족이 많은 교육현장에서 애를 쓰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걸 달랠겠습니까. 대단히 불행하다, 우리 속된 말로 재주는 꿈이 부리고 뭐는 이런 식으로 우리 정말 솔직히 반생해 봅시다, 솔직히. 그래서 이 시상을 정말로 참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단재선생을 모욕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분은 그런 게 아니라 말여. 이 분의 정신을 우리가 살려서 오늘의 그 분의 단재라는 그분의 호를 우리가 한다면 남용하거나 욕되게 해서 안된다 이겁니다. 나는 아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매번도 봤습니다만 교장, 교감이나 아마 교감도 없어요, 교감도. 교장이나 우리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 충북교육의 사도의 대표가 된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정말 이것을 개정하면서 저같은 사람도 진작 행정사무감사나 평소에 교육위원회 활동에서 제가 지적을 못한 것을 이제서 저기해서 대단히 참 늦은 감을 느끼고, 제가 부족했던 점을 느낍니다. 그리고 공로상 같은 데까지도, 공로상까지도 공로상의 그 영역을 보십시오. 거기에 공로상에 보면, 충청북도내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일반인 단체 및 기관이에요,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해에는 아마 초등교

장을 하나 주니까 중등교장이 빠져서, 어째서 이 공로상이 영역에도 없는데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준 다음에 충북교육의 학생상 선정이 어떠니, 또 공로상 선정이 어떠니 말입니다, 이러한 주고도, 일하고도 욕을 먹고 말이야, 객관성이 어떠니, 이런 얘기가 이게 우리 교육가족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 충북교육을 대표하는 소위 사도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전부 다 교장이고 전문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십수년간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 구성만 보더라도 정확한 명분이 없어요. 15명 이내고, 부교육감이 그렇고, 저는 이 심사위원 같은 것은 앞으로,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이 정말 투명해지려면 심사위원 부교육감이 하고 당연직 들어가고 늘상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뭐 집안잔치, 저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뭐 교육감 산하에 부교육감 해서 위원회 해가지고 이거 막말로 밀그림 그려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말여, 이런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래서 이번에 전교조가 이번에 단체협약에 보면, 우리 인사에도 대표를 하나 교사를 대표로 참관시켜야 되겠다, 참관. 그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뭐니까, 그간의 인사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이거죠. 하물며, 이러한 단재선생의 귀한 분, 선구자를 우리가 정신을 기리겠다는 이러한 시상에서 조차 이렇게 아주 어느 한쪽으로,

그래서 이 시상에 대해서 앞으로 선정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시대의 변화가 와야 된다, 저는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심사위원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쓰셔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추천하는 기간을 전부 삭제를 했어요, 그렇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 조일환 위원

그러면 1년 중에 무시로 추천할 수 있습니까? 그래 왜 그랬어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1년에 한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공문상에 언제까지 추천을 하라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그때 그때 가서?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글쎄 왜 그러면 지정해 놓는 거와 그러니까 뭐 수상 뭐 2개월 전이라든지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뭐가 달라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9월 말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즉 시행한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 이전에 시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9월 말.....

● 조일환 위원

9월 말까지 추천을 받았는데?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 조일환 위원

그런데.....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그렇게 돼 있는데 시행한 기록을 보니까 그 이전에 추천받은 것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그런 진행이였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땡겨서 한다든지 어려움을 여기서 보완해야지, 1년 열두달 상시 이것을 받는다, 그래도 언제 이렇게 단재시상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추천해 주시오 언제까지, 그런 것 없이 그때 그때 가서 협의를 하겠다.....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시행 공문상에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글쎄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어떠한 우리가 대상이 되더라도 그 상을 시상하는 기점으로 해서 적정한 그 추천기간을 주는 것은 상식입니다. 삭제해서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점이 뭐니까, 과장님? 뭐 사무능률에 뭐가 보탬이 있습니까? 저는 오해만 산다 이거여, 오해만 산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도 좋다, 1년 내 열어 놔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년 내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때 시

행할 때 언제까지 내나라, 그러겠다는 얘기 아니 형평에 따라서, 그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이것도 조례인데 객관성이 없고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정안을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수정의결을 하든, 원안통과를 하든 여기 이제 이야기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간이 실제로 해 봤더니 16년간 해 봤더니 이 기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조금 늘려야 되겠습니다, 간단한 그것을 명시해 줘야 우리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조례상 심의, 공적할 때, 그 심의할 때 사실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상으로만 하느냐 이 말이야, 아니면 사람을 시켜서 은밀하게 수상자는 모르게, 지금 우리가 평화대상이니 봉사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심사위원회에서 협의 및 현지 실사까지 합니다.

● 조일환 위원

글쎄, 현지 실사.....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에

● 조일환 위원

실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에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하셨겠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에

● 조일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구체적으로 없고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15인 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구성인원은 어떻게 돼요, 구성내역.

● 교육국장 이주원

인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인사위원회 사회인들이 세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이것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럼 인사위원회 15명 중에서 3인의 일반인이 심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발언할 기회는 있으십니다.

● 조일환 위원

발언은 있다, 아,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고, 일반인 3명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촉을 합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인사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을 합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어떤 심사기준이 아니라 그것은 말하자면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지금 공로상 한번 시상에 보십시오. 다 유명인사 내지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다 공적인 직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충북교육에 정말로 이 공로하

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분들 뿐이 발굴이 안됩니까? 이렇다면 우리 단재상에 또는 여타 상에 정말로 수상자로서의 적임자를 선정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정말로 마땅히 받아야 될 상을 받는, 이러한 쪽으로 정말로 해서 상을 준 다음에 이런 것이 없도록, 그리고 이번에 학생수상자를 추천인을 열두명에서 여섯명으로 했습니까, 여기. 뭐가 돼 있습니까, 여기에 12인을 6인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단재교육상을 심사를 해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교육감님에게. 그런데 학술상, 사도상, 공로상 해가지고 여섯 사람이 추천이 되고요, 학생부문에 면학, 충효, 봉사상이 합쳐서 여섯명, 그래가지고 열두명이 추천이 됐었는데, 학생상이 삭제가.....

● 조일환 위원

그럼 배수로, 배수로 된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사도상 두명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 조일환 위원

학술상 두명 선정하고, 공로상은 그러니까 세 개니까 12명을, 배수조 배수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학생부문이 삭제가 되니까 이제 여섯명만 되는 거죠.

● 조일환 위원

여섯명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여섯명이다, 뭐 상이라는 것은 이제 주관하는 교육감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여하튼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는 교육감의 의지대로 이 시상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두명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심사위원을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모든 게 위임이 돼서 거기서 끝나야지, 이게 또 가가지고 “자, 둘 중의 하나를 누구를 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오히려 교육감 입장만 곤란하다 이거죠, 교육감 입장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질의나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해 보면, 학술상에 최영희 교사 한 사람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공로상이나 사도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육에 관한, 학술에 대한 확실한 공적이 있어서 교사 하나 받고는 모두가 교장, 교감, 아니면 사회를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이러한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유명 인사들이 주로 시상을 받은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북 학생이나 학생의 그 수상 부분이 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먼저번에는 언론에 보니까 상당히 많다고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받을 상이라면 지체없이 더 발굴해서 더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정하는 상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겠습니까마는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구체적으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 위원장 이충원

예

● 김광수 위원

이 단재교육상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그 뜻과 의미가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빨리 회의진행을 해야 될 텐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충북의 교육감이 주시는 상 중에서 단재교육상이 제일 큰 상인가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위상으로 봐서는 제일 높습니다.

● 김광수 위원

위상으로 봐서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 김광수 위원

그런데 위상으로 봐서도 높고, 시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그때 다릅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100만원씩 드립니다.

● 김광수 위원

100만원씩?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 김광수 위원

일반부문은 100만원씩이고 학생은 어떻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30만원씩입니다.

● 김광수 위원

30만원, 그러면 이제까지 일반에게 상금으로 봐서 100만원씩 주는 단재교육상 말고는 다른 것은 없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글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학생도 그렇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 김광수 위원

학생도 30만원씩 주는 것, 이것 말고는 없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없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추천할 때, 아까 15인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부문에 두 사람씩 한다고 했는데 그 추천을 어떤 방법

으로 합니까, 열다섯명이 심사하면서 최종적으로 두사람을 추천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투표제로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두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까,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부문에 두사람씩 추천을 했는데.....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총 인원은 15명입니다마는 부문별로 담당을 해가지고서요 부문별로 세 분, 두 분씩 담당을 해서 그 세 분이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해서 둘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 김광수 위원

다시 열다섯 명 중에.....

● 교육국장 이주원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구성.....

● 김광수 위원

위원장을 빼고서 열네 분이, 열네 분이 3개 부문을, 말하자면 일반인상 사도, 학술, 공로 이렇게 해서 3개 부문 소위원회를 구성하네요?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추천 올라온 것을 총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승인해서 교육감한테 추천한다?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김광수 위원

뭐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더 이제까지 운영해 오면서 장단점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더 심각하게 더 좀 깊이있게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가부간에 인사위원회에서도 한번 더 심사를 해서 거기서도 한 사람을 교육감한테 추천을 해서 올려야지 두사람씩을 올릴 것 같으면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그런 재량권을 교육감에게 준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 15인들이 참 심사숙고해서 “이 사람이다” 한사람을 추천해서 올려야지 거기서 복수로다가 두사람을 추천해서 올린다는 것은 “교육감 당신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오.” 그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추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례가 그런 것이라면, 지금까지 해온 조례가 그런 것이라면 보다 더 조례를 이 차제에 더 연구를 하셔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그것이 잘못될 것 같으면,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외부에서는 “뭐 교육감 마음대로 하는 거” 이렇게 얘기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우리가 다른 분야의 상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거기서, 그 인사위원회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말하자면 심사위원회죠. 심사위원회에서 딱 결정을 해 줘야지 그게 되는 것

이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 조일환 위원

그것을 간단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그런 무슨 평가위원회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위상이나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사실은 그런 것을 사전에 이런 참 중요한 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 “어느 위원님 한 두 분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같이 참여하면 얼마나 이런 게, 그 심의하는 과정이 투명해지고 말여, 아, 그래도 지역 우리 교육가족의 대표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것 못 봤어요.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 뭐 다 관심들 가지시고 전문가라고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객관성 있는 사람이 한다면, 이런 쪽으로 구성하는데 관심을 뒤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그런 것은 얼마든지.....

● 조일환 위원

예

● 김광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학생부문을 떼어서 충북학생상을 만들 적에 여기에 준하는 시상금 한 30만원 기준해 가지고서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사정 봐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그것은 그 수준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광수 위원

더 많이 늘린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 김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다른 위원들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조금 참고를 해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것 끝나고 난 뒤에는 본청에서는 귀에 다 안들어 오시지마는 안테나에, 참 말이 많다고 하는 것만 그냥 그대로 본청에서, 원래 말이 많게 돼 있지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이 때는 이유가 혹시, 저는 찬성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떼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뎀으로써 이것을 분할해서 이렇게 상을, 다른 국면에서 단재가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상을 주는 학생만 한다는 것은 혹시 아까 뭐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학진학에 있어서 금년부터 수시모집을 합니다. 수시모집을 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성적도 성적이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면에서의 평가이니

다. 즉, 봉사라든지 또는 뭐 지금 얘기대로 사회적인 공로, 이래서 교육감님 상 받으면 아마 모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점수를 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봐가지고 조금 수를 증가하는 것이 좋은 면에서 학생들을 자꾸 고무시키고 이런 면에서 저는 좀 떼어서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가의 기준을 이렇게 선생들하고 학생하고 한데 놓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매년, 금년에도 했습니다. 마는 도민대상심사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을 때 보면, 학생부문에는 한 명도 아직 준 일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른하고 이것을 갖다놓고 섞어놓고 보니까 아직도 시원참여, 학생은 학생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놓고 봐야 하는데 젊은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 보다도 기성의 세대에서 평가하니까 이것이 영 수상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안할 일은 뭐고 하면, 앞으로 이것은 떼라, 학생은 학생대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려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제가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중·고도 마찬가지로.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고등은 고등대로 이렇게 시상을 하는 어떤 소위 바로미터, 기준을 뒤편 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수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

각, 상은 주면 좋으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기간의 문제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도민대상 아마 뭐 이 국장님도 참여하실 것 같은데 1주일 전에 알려 줍니다, 심사위원에게. “선생님, 심사위원인데 극비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인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개된 것 아닙니까?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선생을 선생이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그 분야별로 효면 효, 예를 들면, 사도면 사도, 연구면 연구, 이런 분야로 앞으로는 아마 좀 분할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나 우리 이 국장 아시죠, 반드시 도민대상 심사위원 중의 하나는 관리청에 하나밖에 안들어 갑니다, 하나밖에, 관리청에 있는 분은 하나밖에 안들어 가고 다른 전공분야, 특수분야가 들어가는 데 또 하나 반드시 금년에 들어간 게 뭐고 하면 그 분야의 도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는 여덟 분이 앉아 있는데 반드시 도의원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알아보시면 아시지마는 이런 것도 조금, 아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위 그 분에 대해서 아는 방법, 이런 것이 아마 필요하지 않나,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을 중

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쟁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지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들을 죽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조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떼느냐, 안 떼느냐 이제 그쪽 차원에서 내놓은 안인데, 기타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단재상 추천을 받았을 때 학교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 추천이 아주 미진하게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옛날과 같은 그런 단재상 추천이 올라오지 않아요, 학생들이, 사실은 올라와도 그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탈락시키고 그렇게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부문만은 별도로 우리가 다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그 칭찬해 줌으로써 학생들을 잘 길러내는 쪽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별도로 떼어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아주 성실한 그러한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길러내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충북학생상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바꿔서 하는 것도 의의가 크겠

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떼어서 하나씩 그쪽 것은 좀 허용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의 말씀 나누신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 위원장 이충원

전적으로 고려를 하시겠다, 이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소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것 중에서 제가 2년간 본 중에 가장 진지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좋은 안이 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는 조금 정회를 하겠습니까.

다른 분 더 말씀하실 분 없어요?

●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문제를 단재교육상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이 정도에 그친다는 얘기가요, 그렇지 않으면 더.....

● 위원장 이충원

아니, 상의를 해야지.

● 김광수 위원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기수 위원

지금 5분간 정회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정회 후에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결정하고서, 그 다음에 속개하고서 이것을 떼느냐, 안 떼느냐 아주 확정을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 김광수 위원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충원

아니, 소위원회에서 이게 우선.....

● 김광수 위원

아, 결정을 해야죠.

● 위원장 이충원

잠깐 정회를 해야겠어요.

● 조일환 위원

아니,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관한 것도 오늘 심의를 하시죠?

● 간사 이상일

다 해야죠.

● 조일환 위원

이것은 무슨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서 저는 기왕에 점심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그 얼마가 걸리든간에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심의를 하시고, 이것도 같이 우리가 의견조정할 때 같이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잖아요?

● 이기수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11시에 시작해서 1시간 15분 정도 걸렸는데 우리가 한 5분 동안에 단재교육상에 대한 의견을 서로 조율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확정하고서 바로 또 그거 하고서.....

● 조일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번 일이 혹시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도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심의한 다음에 또 의견조정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 이기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그 안건도 또 있어요.

● 김광수 위원

아니 뭐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화장실에 가실 분은 화장실에 가시고, 차 좀 주실 일이 있으면 차 좀 주시고, 이 자리에서 계속하면서 이렇게, 그것은 이따가 이 세 건 다 검토하고서 의견조정할 것은 다음에 나가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까 싶어요.

● 조일환 위원

오후에 하면 어때요? 아주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 위원장 이충원

그것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 김광수 위원

아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여기 속기사도 그렇고, 저기 한 5분간은 정회가 돼야 될 것 같으네요.

● 위원장 이충원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충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협의된 대로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 제6항의 추천시기를 삭제하지 않

고, 당초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10월 말까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단, 이 의결을 전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드린 대로 세부 단재 교육상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본청에서 이것을 수정안을 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발의로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조일환 위원

의의가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지금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방 전 회기에 조례안을 수정조례안을 냈다가 집행청에서, 또 한달 후에 미흡하다니까 또 다시 내서, 그것 김 위원님 어떻습니까?

●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 조일환 위원

어렵죠.

● 김광수 위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의회 가야 됩니다, 이게.

● 조일환 위원

그럼요.

● 김광수 위원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의회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의결했다가 또 개정안 또 나와서 한달 후에 또 그 단재교육상 문제 가지고 또 의결을 해서 또 도의회 가고, 이게 이렇게 안되는 거예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하루 이틀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한두달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 교육국장 이주원

못미더워서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들이 구성관계를.....

● 김광수 위원

아니 아니 봐요, 국장님.

못미더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의 추진상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 유보했다가 2월에 이것을.....

● 교육국장 이주원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조일환 위원

아니,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84년도까지 2000년도까지 교장이냐, 죄송합니다, 전문직의 간부가 그래 사도상을 독점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아까 저 때문에.....

● 조일환 위원

아니 저 때문이 아니라, 나는 대단히 죄송한데, 그래 오늘날까지 정말 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한 결과가 이겁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은 국장님은 나름대로 우리는 다 공정을 기하려

고....., 전혀 이게 안돼 있잖아요, 전혀 결론이.....

● 교육국장 이주원

교사서부터 공로를 쌓아가지고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 상을 타게 되는 거죠.

● 조일환 위원

글쎄,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위원님들이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제기를 한 것이니까.....

(장내소란)

● 위원장 이충원

한 4,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8분 정회)

(12시 49분 속개)

● 위원장 이충원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표결을 해 볼까요?

(“결정된 사항대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일단 이번 상정한 이 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김광수 위원

나머지 안건은 점심 잡수시고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충원

다음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안은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시쯤이 좋을까요, 2시 반쯤?

●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요.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50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 위원장 이충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의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이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써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원안전망이라는 것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지는데, 그 세가지 안전망 중에

예방적 안전망에 속하는, 즉, 교육활동관련 분쟁의 학교내 자율적이고 교육적인 해결을 위해서 설치되는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전문 13조와 부칙 3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정근거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지금 작성된 이 조례안은 교육부의 준칙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교원의 관련된 분쟁사항을 심의·조정·권고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기능 중에는 교원과 학부모 간에 발생한 분쟁이라든지,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추가보상, 또 교권보호 존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을 심의·조정·권고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2조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무에 대한 것이 돼 있고, 6조 내지 7조에서는 분쟁조정 신청 및 회의개최에 대한 것이, 그리고 8조 및 9조에는 위원의 제척이나 심의 등 결과처리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는 교육청의 지원에 대한 사항이 전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 참 조 :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본회의(별첨 5)

● 위원장 이충원

예, 가만 있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구체적인 거.

● 김광수 위원

먼저 안건을 보내줬으니까.....

● 위원장 이충원

그렇게 하고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교육부의 준칙에 아주 이것은 손을 여기 특별히 손을 댔다, 이것이 있으시면 설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거기에 손을 댔 사항은 위원수, 위원수가 여기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준칙에는 5명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좀 제한이 돼야 될 것 같아서 5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더 이상 설명 없으시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 김광수 위원

이번에는 저쪽에서부터, 말 많으신 저쪽에서부터.....

● 위원장 이충원

나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혼나요.
지정했으니까 말씀하세요.

● 김광수 위원

저쪽부터 안할 테요?

● 위원장 이충원

아니, 했으니까 나도 권위를 좀 세워야지.....

(웃음소리)

● 김광수 위원

다음번에는 저쪽부터 하기에요?

● 위원장 이충원

에

● 김광수 위원

저는 질문 없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송진하 위원님.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교원 지위향상을 위해서 아주 시기적절한 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보면, 교원의 예우에 관한 내용하고 또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두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원에 대한 예우문제는 뚜렷하게 '이렇게 하면 예우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사명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물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겠죠. 또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

다, 또 도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 한다면 뭐를 노력하여야 하느냐, 그래 도단위에서는 뭔가 앞으로 교원에 대한 예우에 그 지역사회에 적절한 그런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규정이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 뭐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면 누구나 누가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우를 한다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우를 받으려면 교원 스스로도,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사회로부터 현재 교원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예우는 우리가 너무 비참합니다. 무슨 지역사회 행사에서 지역의 기관장인 교장이 단상에도 못 올라가는, 그러한 한가지 예를 들면 그런 실정인데, 뭔가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유관기관하고 절충을 해서 뭔가 똑똑 부러지게, 이렇게 예우하자 하는 뭐를 앞으로 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2페이지 제2조 2항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조직이 되어 있는 안전공제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에,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거기 제일 끝의 줄에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조직되어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말고 또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한다는 것입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그것은 명칭이 잘못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 송진하 위원

그러면 같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학생사고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은 안전공제회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안전공제회에서 못한 것을 여기 안전관리공제회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5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제시되어 있는 명칭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같은 안전공제회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게 안되죠. 여기 2페이지에 안전공제회는 학생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공제회 기금으로 학생안전사고가 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인데 학생들로부터 걷은 돈을 가지고 교원을 해 준다면 그것도 안되는 거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안전공제회에 교육감이 특별히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을 해가지

고 할 수 있도록.

● 송진하 위원

안전공제회는 학생에 대한 것인데, 여하튼, 그것이 분명치 않고, 이 법은 교원에우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안전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해주는 아주 적절한 법인데 이 시행이 잘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세부적인 것은 그래도 단위 자치단체에서 뭔가 규정을 해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거기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하면 어떻게 노력을 하는 거야, 이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거기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물론, 교육부에서 모법에 한정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건의해서 꼭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귀속시켜 갖고 그 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폭넓게 일반 중에서 그것을 임명할 때 말입니다 적절한 사람이 있다고 하든지 하면 절적인 분을 그냥 위촉해야지 이것을 꼭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또 나중에 그 운영위원의 임기가 끝나든지 하

면 또 해촉문제도 또 그렇게 되는데, 그거 한번 교육부에 앞으로는 건의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상일 위원님.

● 간사 이상일

저도 두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거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그렇습니다.

● 간사 이상일

구성을 다 해 놓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학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이 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구성을 보면 교원 위원 중에서 한 사람, 학부모 위원 중에 한 사람, 지역 위원 중에 한 사람, 그 세 사람하고, 학교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외부에서 유력인사를 하든가 아니면 학부모 중에서 선출을 하든가 그것은 자유입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운영위원 중에서 하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든지 그것은 누구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상일

관계가 없는 것으로.....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 간사 이상일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것은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저명인사, 무슨 변호사라든지 또는 무슨 이런 분을 위촉하면 좋은데, 그 뒤에 보면 무보수,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말이야,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을 초청을 하면 적어도 일당은 못 주더라도 거마비는 주어야 그 사람들이 오시기가 좋을텐데, 이래 놓으면 분쟁이 좀 커졌을 때는 교장선생님, 아니면 학부모 대표, 선생님 대표야 나서기 어려울테고, 이 분쟁이 잘 가서질까 하는 걱정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송진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생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다쳤든지 또는 무슨 일이 있어서 보상을 줄 때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서 주면 되는데, 가령, 학생이 선생님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구타를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든지 보상을 받아야 될 때에는 그것도 안전관리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대개 지금 안전관리공제회 기금은 학생들이 연 800원인가 얼마씩 내죠, 한 사람당 그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 간사 이상일

그래 학생들이 사고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거기서 내는데, 이 못된 학생이 먼저도 뭐 여선생님 머리채를 끄당겼던지 더 심해가지고 폭행하는 선생이 많이 다쳤을 때

그 병원비라든지 구속 저기 하는 것도 여기서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조금.....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교육감이 안전공제회에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도 같이 그 속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 간사 이상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 간사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다음, 조일환 위원님.

● 조일환 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저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조금 물어보아야 할 것은 교원지위향상이라는 교원지위우대법, 별도로 있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아까 제가 들어서 공감을 하는데 송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 거기서 아마 저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것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광역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저도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할 것이 있는데, 그냥 계속하죠.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50분)

● 위원장 이충원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입니다.

회의 도중입니다마는 지금 교육국장님과 초등교육과장님이 다른 회의주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으

시겠지요?

● 김광수 위원

그 소관 아니죠?

● 위원장 이충원

예, 그 소관 아닙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춘우

총무과장 신춘우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행정기관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초고속 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지역교육청의 정보화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열 두명이 발령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전산인력을 갖다가 한시정원으로 배정하게 되는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각급 학교 전상망, 인터넷 통신망, 교육행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교육정보화 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서 이를 운영할 전문 전산인력이 절대 필요한 실정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 동결, 또 공무원 총정원제 실시 등 현 실적 여건이 정규 공무원 확보가 불가능해

서 교육부에서는 행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어렵게 한시 정원을 확보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은 12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개정근거와 개정조례안 신·구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본회의(별첨 5)

● 위원장 이충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일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 조일환 위원

제가 세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이것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 어떤 사람을 선발합니까?

● 총무과장 신춘우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이 정보처리 기사 등 관련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 조일환 위원

정보처리.....

● **총무과장 신춘우**

기사자격증.

● **조일환 위원**

자격증도 많은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정보처리사 기능입니까?

● **총무과장 신춘우**

예, 주로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니 주로가 아니라 명확하게 그 자격이 있을 거란 말이죠.

● **총무과장 신춘우**

자격요건이 있죠. 법규를 봐야 되는 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 **조일환 위원**

그러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정원의 수를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포함해서 2,828명인데, 그 중에서 정보화 사업이 2000년도에 대통령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전 국민의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전산이 지금 워드나 하드가 깔려있는데 그것을 직접 담당할 시·군교육청, 지역교육청에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교육부에서 부득이 우리 시·군교육청에 청주를 포함해서 12명을 주기로 해서 일단 정

원을 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운영을, 어느 사람을 임용하기 이전에 그 대상자를 임용하기 위한 정원을 열두명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과연 우리가 정원을 주면 어떠한 자격자를 임용을 할 것이냐까지 염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임용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도록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임용 행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특수 전문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 기성 행정직이나 전문직들이 이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년제 정규대학에서 전산을 전공하고, 기능사 내지 우리가 임명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격을 가진 자들을 선발하도록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개선발이죠?

● **총무과장 신춘우**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말입니다 전산관련 자격증이 엄청 많습니다.

● **조일환 위원**

글쎄말입니다.

● **총무과장 신춘우**

그래서 거기서 기사자격증 이상만 소지하면 자격이 됩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공개선발 과정을 택하겠죠, 이게?

● 총무과장 신준우

그래서 이게 정원만 선발하는 것이기 아직 거기까지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 조일환 위원

아, 규칙으로 하겠다?

● 총무과장 신준우

예

● 조일환 위원

글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좋은 뜻으로 정원이 증원이 됐는데 충분히 여기에 맞는 자격소지자, 선발방법, 또 여기에 대한 보수의 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각 교육청에, 제가 이 12명으로 봐서 교육청에 한 사람씩 본청에 한 사람, 그렇게 됩니까, 운영이?

● 총무과장 신준우

국이 설치된 교육청은 2명, 청주말입니다. 기타 교육청은 한 명씩 해서 열두 명입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그래서 전체가 다 나가는군요.

● 총무과장 신준우

예

● 조일환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 간사 이상일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3조를 4조와 바꾸고 3조를 이제 신설해 넣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1차 기간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이 필요로 하다 했을 때는 다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한시 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2년 연장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신준우

연장기간은 안 나왔습니다.

● 간사 이상일

연장기간은 없고 한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신준우

예

● 간사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같이 추진할 것이 규칙도 얼른 신속히 정해서 이게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시간을 자꾸 지체한다든지 하

면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사람을 준 인원을 가지고서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승인되는 중에도 작업을 해 갖고 승인하는 동안이라도 신속하게 규칙개정도 해 갖고서 사람을 충원해서 바로 우리가 지역교육청에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하 위원님.

● 송진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김광수 위원님.

●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 한시정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2002년 12월 31일자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날짜로 자동 해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신준우

글쎄, 그 사람들 임용방법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임용할 것인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임용할 것인가를 지금.....

● 김광수 위원

지금으로 봐야 한시적이지.

● 총무과장 신준우

한시정원이지만 임용방법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있는데, 그래서

2002년 12월 말이 지나면 지금 총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통·폐합 등 관련해서 이 기능직이 많이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직을 감축을 시키고서 이 사람을 계속 정규직으로 둘 것인가, 이 방법을 하나 고려 중에 있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다 순수하게 계약직으로 임용해서 2년 동안만 우리가 활용하고 나머지는 자동 해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관계를 지금 제가 교육규칙에 정하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2년 후에 전문인력이 한정직으로 한시적으로 끊게 되면 너무 경직성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근무하는 동안에 상당히 능력 발휘 하는데도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 결과는, 일단 정원이 12명 늘은 것은 정원은 2002년 12월 31일로 없어집니다, 12명이, 지금 현재 연장하지 않는 한.

● 김광수 위원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러면 그 12명의 개개인의 임명자는 사실상 정원의 T/O가 없는 한, 정원의 여백이 없는 한 사실상 계약직으로 했던, 일반직으로 했던 기구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2,800여명의 인력을 운용하다 보면 그 동안에 사전에.....

● 김광수 위원

전국적으로 봐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언제고 이것이 사전에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직업인데 한번 직장에 들어온 이상 능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2년 동안 해 봤더니 정원을 딱 떠나서 사람이 도저히 능력이 우리 교육계에 도움이 안된다 하면 그것은 정원이 확보되든 안되든 저희들이 퇴보시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 정원이 임시정원일 뿐이지 그 사람을 계속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는 저희들이 주어진 정원 2,823명에다가 열두명을 플러스 한 인원 중에서 12명을 버린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2년 동안 운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말로 경직되게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규직으로 9급 공무원, 아니면 7급 공무원으로 딱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정규직 T/O로 그 사람들을 활용할 것이냐는 교육규칙에서 아니면 임명상에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적으로 본다면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전산화를 하면서 이 전문인, 전문인력입니다, 이게. 전문 그 고급인

력을 쓰면서 2년만 쓰고서 한시적으로 다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내보내게 돼 있던 말이죠. 그러면 너무 전문인을 2년간 쓰고서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은 조금 고려할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정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또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없을런가 말ियो,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덧붙여서 염려해 주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에는 임시직하고 정규직하고 상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임시직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죠, 정원으로 볼 때는 임시직이죠. 개인이 볼 때는 이제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정규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개인의 신분은 틀리지만 정원은 하여튼 열두명이 2년 후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정원을 없애주면 기존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상계 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의 12명을 줄여서는 안된다, 다만, 사람이 기존에 있는 그릇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존에 있

는 사람들을 12명 없애버리고 이 사람들 쓰겠다, 그렇게 정원상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수고하셨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저, 위원장님.

● 위원장 이충원

에

● 조일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것도 이게 임시직이면 우수인력이 확보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그래서 그게 상계가 안되더라도, 아까 우리 국장님 두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저축이 안되는 한 신분보장을 받고, 그리고 공개전형을 하고, 공개전형, 그래서 완전한 신분보장을 받는 사람이 우수인력이 확보돼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규칙이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해서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저대로 조금 의문나서 여쭙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을 준 것이 인력의 필요에 의

해서 이것을 교육부에서 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퇴출이 되면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준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과장 채수병입니다.

당초에 조금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이 정보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과에 있던 것을 그렇게 승격을 시켜가지고 하면서 저희들 각 시·도 정보화과장을 불러서 지금 정보화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첫째 요건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16개 시·도 정보화과장들이 모두 일성이 전문인력이 없어서 정보화과가 있는 도나, 지금 없는 도도 있습니다, 과가 없는 도도 있는데, 일선 시·군에 정보화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인력이 없다, 그러니까 장학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지원단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가서는 도저히 이것은 못하겠다 전문인력으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겠다, 일반직도 총정원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는 늘릴 수가 없는, 기구 축소해서 못 늘리니까 임시직으로 해서 2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명씩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이 넘는 그런 시에는 두명씩 두도록 이렇게 하겠

다, 그렇게 해서 이 전문직, 그러니까 이 장학사 한 분이 맡고 있는데 일선 실정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전문직 지금 정보를 담당한 장학사님 밤 11시가 돼도 퇴근 못했습니다. 이것. 또 두 번째 이제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이분들이 자꾸 새로 전문직이 오기만 하면 실무자로 담당하도록 하니까 저희들이 그게 제일 애로였습니다. 전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릅니다, 조금 전문 분야가 돼서. 그래서 그 장학사를 도와서 일을 하고 또 서버관리라든지 관리를 해야 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아마.....

● 위원장 이충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채용하는 것은 순전히 과원을, 바꿔 얘기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퇴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아까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이 분야에 정말로 유능한 전문인을 모시는 것 아닌가, 이런 기회로 봐집니다.

● 총무과장 신준우

예, 맞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데 이제 다만 그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어떤 구조조정상 남는 잉여인원을 흡수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일반직 중에서도 충분히 전산능력이 있어가지고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9급이나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내가 그 분야에 전문가이고,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고 해서, 나를 그리로 보직을 그리로 옮겨 주십시오 하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직의 안배 차원에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남는 어떠한 구조조정 인원을 흡수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얻어진 제도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저희가 어떤 규칙이나 또 법을 제정한 후에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래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그때 가서 그렇게 되더라도, 자칫하면 이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대개 우리가 이러죠, 가다가 보면 자리가 날 게 아니냐, 이래서 만일 2년이고 3년 후에 정말 이보다 더 강한 구조조정이 왔을 때에 그 대처하는 방안이 대단히 난처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단히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공모할 때 그 소위 자격조건이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무조건은 상당히 검토를 하셔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유능한 인재를 쓴 후에 그만 2년 후에 폐기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2. .

위원장 이충원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1. 1. 29. (월) 12:0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2001. 1. 30. (화) 11: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